

2001년 일본군 '위안부' 연구 보고서

## 일본군 '위안부' 증언. 통계 자료집

(사)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 인권 센터  
여 성 부

## 일본군 군 '위안부' 증언.통계자료집을 발간하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0년 11월에 창립된 지 만 11년이 지났다. 11년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을 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우리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녹취하여 이 세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알려내고 입증하였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1년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성과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설기관으로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를 개관하였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보다 심화시키고, 그 연구영역을 '위안부'문제 뿐 아니라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무력갈등하의 여성폭력을 주제로 보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의 첫 연구사업으로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 증언통계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출판된 6권의 증언집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증언을 담아냈다면, 이번 증언통계자료집은 피해자 증언조사의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상 전체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피해자들의 개인 인적사항, 동원을 전후로 한 상황, 군'위안부'의 경험, 종전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담았다. 앞으로 이 증언통계자료집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여성부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다. 설문지작성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수고해준 이상화 선생, 양현아 선생, 여순주 선생,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전반적인 진행을 한 양미강 정대협 총무, 각종 실무를 진행한 김동희 선생,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준 정신대연구소, 대구시민모임, 정대협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완성된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조언해준 신영숙 선생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2002.1.30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소장 정진성

# 차 례

조사 목적과 개관

본 문

1장 개인 인적 상황

2장 군 ‘위안부’ 동원 전 상황

3장 강제 동원 상황

4장 군 ‘위안부’ 상황

5장 종전.귀환 상황

6장 귀국 후 현재 상황

요약 및 제언

설 문 지

차 트

## 【 표 순 서 】

### 1. 개인 인적 상황

#### 1-1. 생존자 출생지 및 현 거주지

<1-1> 생존상태

<1-2> 조사가능여부

<1-3> 출생연도

<1-4> 출생지 (국내)

<1-5> 출생지 (국외)

<1-6> 현 거주지는 (국 내)

<1-7> 현 거주지는 (국 외)

<1-8> 현 거주지는 (시, 군)

#### 1-2. 군 위안부 신고

<1-9> 신고시기는 언제

<1-10> '위안부' 신고를 한 단체는

#### 1-3. 본인 기초사항

<1-11> 본인의 학력은

<1-12> 본인의 종교는

<1-13> 본인의 형제,자매 수

<1-14> 본인의 형제, 자매 순위

### 2. 군 '위안부' 동원 전 상황

#### 2-1. 부모의 상황

<2-1> 군 '위안부'로 갈 때 부모님은 생존 하였나

<2-2> 아버지의 생업은

<2-3> 어머니의 생업은

<2-4> 기타가족생업은

<2-5> 군 '위안부'로 갈 때 결혼은 했는가

<2-6> 결혼했을 때 자식은 있었는가

<2-7> 군 '위안부' 연행 당시 하던 일은

<2-8> 군 '위안부' 연행 당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는가

### **3. 강제 동원 상황**

#### **3-1. 동원 시기**

<3-1> 군 '위안부'로 언제 연행되었는가

#### **3-2. 동원 주체**

<3-2> 군 '위안부'로 데리고 간 사람은

<3-3> 군 '위안부'로 데리고 간 기타의 대상

<3-4> 군 '위안부'로 간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 **3-3 동원 명목과 방식**

<3-5> 무슨 명목으로 동원되었나

<3-6> 동원의 방식

<3-7> 연행 당시 돈은 받았나

<3-8>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3-9> 얼마를 받았나

<3-10> 도착지 이동 중 성폭력을 당했는가

<3-11> 함께 끌려간 사람이 있었나

### **4. 군 '위안부' 상황**

#### **4-1. 동원된 지역**

- <4-1> 처음 동원된 나라
- <4-2> 처음 동원된 나라의 지명
- <4-3> 이동한 첫 번째 나라
- <4-4> 첫 번째 이동한 나라의 지명
- <4-5> 두 번째로 이동한 나라
- <4-6> 두 번째로 이동한 나라의 지명

#### **4-2. 위안소 시설**

- <4-7> 위안소 시설형태는
- <4-8> 위안소 시설형태는(해당없음 제외)

#### **4-3. 위안소 주인 혹은 관리자**

- <4-9> 위안소 주인은 누구였나
- <4-10> 위안소 주인은 누구였나 (해당없음 제외)

#### **4-4. 동료**

- <4-11> 위안소 동료
- <4-12> 위안소 동료(해당없음 제외)
- <4-13> 각 동료의 규모

#### **4-5. 체류기간**

- <4-14> 체류기간은
- <4-15> 총 체류기간

#### **4-6.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들 종류와 계급**

- <4-16> 군인의 종류
- <4-17> 군인의 종류(해당없음을 제외)
- <4-18> 위안소 이용 군인의 계급

#### **4-7. 도망 시도 여부**

- <4-19> 도망을 시도했나
- <4-20> 도망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
- <4-21> 도망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해당없음 제외)

<4-22> 도망 시도 결과 어떻게 되었나

<4-23> 도망 시도 결과(해당없음 제외)

#### **4-8. 하루 평균 상대 군인의 수**

<4-24> 하루 평균 상대한 군인의 수

#### **4-9. 위안소에서 폭력**

<4-25> 위안소에서 경험한 폭력의 종류

<4-26> 위안소에서 경험한 폭력의 종류(과약가능한 것만)

#### **4-10. 위안소 내 관계**

<4-27> 위안소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었나

<4-28> 위안소 특정관계의 대상은 누구였나

#### **4-11. 특정 군인과 동거 여부**

<4-29> 특정군인과 동거를 했나

#### **4-12. 군인들의 요금 지불**

<4-30> 군인들의 돈(군표)를 지불했나

#### **4-13. 피해자들의 대가수령 여부**

<4-31> 위안소 생활 중 대가를 받았는가

#### **4-14. 위안소에서 호칭**

<4-32> 위안소에서 사용된 이름은

#### **4-15. 임신과 출산 경험**

<4-33> 위안소에서 임신경험이 있는가

<4-34> 위안소에서 임신은 몇 번 했는가

<4-35> 임신인 경우 어떻게 하였나

<4-36> 출산경험이 있다면 몇 번

<4-37> 출산한 아이의 경우 어떻게 하였나

<4-38> 출산한 아이의 처리(아는 경우만)

#### **4-16. 위안소 생활 중 경험**

<4-39> 위안소에서 경험한 것은

<4-40> 위안소에서 기타 경험

#### 4-17. 위안소 생활 중 질병

<4-41> 앓던 질병의 종류는

<4-42> 성병 종류는

<4-43> 성병 종류(해당없음 제외)

<4-44> 전염병 병명은

<4-45> 기타 질병 병명은

<4-46> 질병 치료 방법은

<4-47> 성병 치료 방법은

#### 4-18. 성병검진 유무

<4-48> 정기 검진을 받았는가

<4-49> 성병검사 주기는

<4-50> 성병방지방법이 있었는가

<4-51> 성병방지로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4-52> 성병방지로 사용한 방법 (중복여부)

<4-53> 성병방지를 위한 약의 종류는

<4-54> 606호 주사를 맞았는가

#### 4-19. 위안소에서 목격한 경험

<4-55> 위안소에서 목격한 경험은

<4-56> 위안소에서 목격한 기타 경험

### 5. 종전.귀환 상황

#### 5-1. 종전 상황

<5-1> 종전 언제 알았나

<5-2> 종전 후 어떻게 이동하였는가

<5-3> 종전당시의 어떤 경험을 하였나

## 5-2. 귀국 상황

- <5-4> 이용한 교통수단
- <5-5> 귀국은 했나
- <5-6> 몇 년도에 귀국
- <5-7> 귀국한 계절
- <5-8> 귀국한 도시
- <5-9> 귀국한 곳의 지명

## 6. 귀국후 현재 상황

### 6-1. 귀국 후 초기 상황

- <6-1> 귀국 후 처음 거주한 곳은
- <6-2> 귀국 후 가족과의 만남이 있었나
- <6-3> 만난 경우 언제 만났나

### 6-2. 생계수단

- <6-4> 귀국 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한 일은

### 6-3. 결혼과 출산

- <6-5> 법적 혼인을 하였나
- <6-6> 몇 번 했는가
- <6-7> 독신으로 살아간 이유는
- <6-8> 함께 산 남자와의 관계
- <6-9> 출산자녀가 있는가
- <6-10> 출산자녀 여아인 경우는
- <6-11> 출산자녀 남자아인 경우는
- <6-12> 현재 자녀가 있는가
- <6-13> 현재 친자녀가 있는가

### 6-4. 건강 상태

- <6-14> 현재 건강상태는
- <6-15>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 <6-16> 정신질환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 <6-17> 성병이 자녀에게 후유증으로 나타났나

#### **6-5. 현재 주거 및 생활비**

- <6-18> 현재 누구와 살고있는가
- <6-19> 현재 동거인과 산지 얼마나 되었는가
- <6-20> 주택소유
- <6-21> 생활비: 정부지원
- <6-22> 생활비: 수입 여부
- <6-23> 생활비: 가족지원
- <6-24> 생활비: 개인,단체후원

#### **6-6. 군위안부 신고**

- <6-25> 군 위안부 신고는 어떻게 알고 했나
- <6-26> 신고 전에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나
- <6-27> 신고 전 피해사실을 말한 대상은

## 조사의 목적과 개관

## 1. 조사 목적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88년 4월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 성 노예 실상에 관한 첫 강연을 시작으로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정신대 관여사실의 부인 등과 관련자료와 증거들의 소각, 파괴, 은폐 등의 상황에서 국내진상조사는 생존자들의 출현과 증언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다. 1991년 당시 67세의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을 시작으로 하여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졌다. 지난 10 여 년간 피해자들의 증언이 총 6권의 증언집으로 출간되었다. 그 동안 증언을 한 100여명의 피해자 개개인의 경험에 바탕한 증언집은 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은 현재(2001년 12월) 한국정부에 피해자로 등록된 203명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과거피해경험과 현재생활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피해양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여 년 간 진행되어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성과와 증언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상 전체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며 피해자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는 한국의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군 '위안부' 경험을 전후로 한 내용을 통계 처리하여 전체적인 경향성과 피해자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통계를 밝혀내는 중요한 작업으로써 이후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커다란 길을 만들어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증언 통계 자료집」을 근간으로 북한 피해자와의 비교 혹은 다른 동남아시아의 피해자 관련 비교연구결과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이 증언통계를 바탕으로 북한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양상

을 비교 분석하는 일은 한국의 피해양상이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반세기전의 기억을 들추어 낸다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만 생생한 기억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억을 들추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기억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작업은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있었던 이 문제를 단순히 자료를 통한 통계조사로 마치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언제, 어떤 피해자가 숨을 거둘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의 증언자체를 또 다시 받아내는 작업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작업은 전체적인 그들의 생활양식과 형태를 통해 전반적으로 그들의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후의 어떻게 더더욱 발전된 양질의 연구를 위한 선행작업으로써의 기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조사 내용

### (1) 조사설문의 구성과 내용

조사설문지는 개인적 변수를 제외하고 89개 큰 문항과 250 여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문문항의 내용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위안부 시절과 전후에 상황에 따른 피해자들의 일생에 관한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첨부한 설문지 참조). 설문이 다루는 내용을 유형화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요약된다.

(i) 개인 인적 상황

(ii) 동원 전 상황

- (iii) 강제 동원 상황
- (iv) 군 위안부 상황
- (v) 종전, 귀환 상황
- (vi) 귀국 후 현재 상황

이 여섯 가지의 항목들은 정진성 교수(현 정대협 공동대표, 서울대 사회학과)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서류를 기초로 한 통계조사를 참조하여 항목을 추가하고 수정하여 설문조사를 위한 항목을 만들었다. 설문지 항목은 증언집, 정부 신고서, 생활 실태 조사서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증언집에 수록된 사례를 중심으로 90%이상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였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답변을 중심으로 하였다.

### 3. 조사방법 : 개관

#### (1) 조사의 개요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에서 실시한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의 표본수는 192명이며 표본은 정부에 위안부로 등록된 203명(2000년 현재)중 자료가 불충분하여 대상에서 빠진 11명을 제외하여 선정하였다.

#### (2) 조사의 진행

##### ○ 조사 원칙

1차적으로 증언집과 신고서(1992-1994년 집중적으로)를 낸 당시 그 상황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설문항목이 작성되었으며, 조사원칙에서도 2001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 증언집과 신고서를 작성한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그 동안 증언조사가 이루어진 대상자들의 경우엔 증언조사를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증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상자들의 경우엔 1차적 자료조사의 성격으로 정부 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차적 설문조사의 성격으로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통한 방문을 통한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

○ 조사 기간 : 2001년 9월 5일 ~ 2001년 10월 30일

○ 조사시에 한계

.초기(1993-94년) 군 '위안부' 정부 신고서는 기준과 상황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편적인 위안부 생활과 귀환상황, 현재생활에 관한 구술이 전부이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자들의 상황과 관계 안에서 중요한 부분에서의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문제점과 항목을 충분하게 채울 수 없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60여 년 전의 시대상(결혼개념의 차이, 직업상의 분류)과 지역명의 차이(동원 지역의 지명을 일본어 발음으로 기억, 국가와 지명과의 차이, 현재 지명과 과거의 지명 차이등)로 인해 작성 상의 혼란이 있었다.

.방문 조사의 경우엔 대상자들의 고령화(대다수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로 인한 기억상실과 건강상태로 인해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방문 조사시에 대상자들의 면담거부로 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증언집에 수록되지 않은 대상자들의 경우, 대다수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기에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접 방문조사의 경우에서 담당자들의 인식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문제에 관해 인식이 없는 담당자들은 여타 다른 생활 보호

대상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 설문조사에 답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남겨두고 처리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양상을 찾아내기란 어려웠다.

### (3) 분석방법

#### ○ 설문지의 정리

.이번 조사방법은 일대일 면접에 의한 조사방법이 아닌 문서화된 증언자료를 토대로 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증언집과 녹취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 신고자료만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대상자와 이 같은 경우의 사망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무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무응답의 경우에는 설문지에 “파악불가”로 부호화 처리하였다. 또한 “해당없음”의 경우는 상위 문항에 답을 하고 그 다음 하위 문항에 답하지 않을 경우와 연속선상의 설문에서 해당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였다.

#### ○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정리과정을 거친 후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모든 문항은 설문지에 나타난 대로 부호화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응답은 파악불가로 부호화 처리하였다.

#### ○ 조사 대상자들의 지역 분포도

## 1장. 개인 인적 사항

## 1. 개인 인적 상황

### 1-1. 생존자 출생지 및 현 거주지

#### <1-1> 생존상태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사 망	60	31.3	31.3	31.3
생 존	132	68.8	68.8	100.0
Total	192	100.0	100.0	

본 조사에서 분석될 192명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은 현재 (2001년 12월) 모두 살아있는 생존자가 아니다. 1980년대 말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사회 운동이 시작되면서 1990년 정신대 연구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된 이래, 1991년 김학순씨가 최초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하고 나섰고, 이것을 계기로 ‘위안부’ 생존자들이 정부나 정대협, 유족회 등에 위안부 생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의 생존자란 현재의 생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1991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약 11년간 공식적으로 자신이 생존자임을 밝힌 분들이라는 의미이다. 본 조사는 이 생존자들의 현재 생존의 상태에 관한 문항으로 출발하였다. 조사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이 전 생존자의 31.3%(60명)이고, 생존이 68.8%(132명)로서 약 3분의 1 정도의 생존자가 지난 10여 년간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대에 이를 만큼 고령이고 계속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며, 본 조사에서 그 증언을 확인하거나 보충할 수 없었던 자료수집의 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생존자 증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엄연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

**<1-2> 조사가능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가 능	69	35.9	35.9	35.9
부분 가능	54	28.1	28.1	64.1
불 가능	10	5.2	5.2	69.3
해당없음	59	30.7	30.7	100.0
Total	192	100.0	100.0	

다음은 현재 생존자의 증언을 직·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조사가 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가능한 생존자들은 전체의 64.1%(123명)이며, 불가능하거나 해당 없다는 나머지 35.6%(69명)를 차지한다. 여기서 ‘해당 없음’이란 사망을 의미하며, ‘불가능’이란 침해, 질병, 조사 거부,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은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라고 해서 증언조사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1-3> 출생연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1910년	1	.5	.5	.5
1911년	1	.5	.5	1.0
1913년	1	.5	.5	1.6
1914년	1	.5	.5	2.1
1915년	4	2.1	2.1	4.2

표<1-3> 다음장으로 이어짐

1916년	3	1.6	1.6	5.7
1917년	6	3.1	3.1	8.9
1918년	6	3.1	3.1	12.0
1919년	5	2.6	2.6	14.6
1920년	10	5.2	5.2	19.8
1921년	20	10.4	10.4	30.2
1922년	26	13.5	13.5	43.8
1923년	15	7.8	7.8	51.6
1924년	23	12.0	12.0	63.5
1925년	9	4.7	4.7	68.2
1926년	25	13.0	13.0	81.2
1927년	11	5.7	5.7	87.0
1928년	9	4.7	4.7	91.7
1929년	5	2.6	2.6	94.3
1930년	5	2.6	2.6	96.9
1931년	3	1.6	1.6	98.4
1932년	2	1.0	1.0	99.5
1934년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1-3>는 생존자들의 출생연도를 나타낸다. 출생연도는 1910년(현재 생존시 92세)에서부터 1934년(현재 생존시 68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24년이라는 분포의 폭은 위안부 연행이 ‘젊은’ 여성들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점을 시사한다. 위안부 연행이 일정 연령의 여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식민지 조선에서 그 연행기간이 몇 십 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거나, 위안부 연행의 대상이 된 여성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폭이 넓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이후 분석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분포 연령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910-1915년 사이의 출생자는 전체의 4.2%(8명), 1916-1920년 사이의 출생자는 15.6%(26명), 1921-1925년 사이는 48.4%(93명), 1926-1930년 사이는 28.7%(55명), 1931-1934년 사이는 전체의 3.1%(6명)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때, 위안부 생존자

들은 주로 1921-30년까지의 출생자가 절대 다수 (77%; 148명)를 점하며, 특히 1921년에서 1927년 생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재 생존시 81세에서 75세). 이러한 연령 분포의 특성은 1937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 전쟁상황과 더불어 한국에서 위안부 연행이 가속화되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남북한 공동기소장(이하 기소장), 2000; 정진성, 1998]. 이와 같은 연령분포는 군 ‘위안부’ 연행 정책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계속되는 분석을 살펴보자.

#### <1-4> 출생지(국내)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파악불가	7	3.6	3.6	3.6
서울	6	3.1	3.1	6.8
경기도	7	3.6	3.6	10.4
충청남도	11	5.7	5.7	16.1
충청북도	4	2.1	2.1	18.2
전라남도	17	8.9	8.9	27.1
전라북도	19	9.9	9.9	37.0
경상남도	59	30.7	30.7	67.7
경상북도	47	24.5	24.5	92.2
경상도	1	.5	.5	92.7
강원도	2	1.0	1.0	93.8
함경북도	2	1.0	1.0	94.8
평안남도	5	2.6	2.6	97.4
평안북도	1	.5	.5	97.9
고아라알지못함	2	1.0	1.0	99.0
함경남도	2	1.0	1.0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1-4>은 생존자들의 출생지를 나타낸다. 먼저 출생지는 전국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군 ‘위안부’ 동원이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행해졌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출생지역은 경상남도과 경상북도로서 전체 생존자들의 55.7%(106명)가 경상도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18.8%(36명), 다음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7.8%(15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북한 지역(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도 5.1%(10명)로서 북한 출신자가 미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가 남한에 거주해 온 생존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출신의 군 ‘위안부’의 비율은 실제로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경상도와 전라도와 같은 남부지역에 출생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상도 출신이 전체 생존자의 절반을 넘으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 출신이 경상북도에 비해 더 많은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대협 & 정신대연구소, 1993:18; 정진성, 1998).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경상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에 피해자가 몰려있는 것은 무엇보다 일본과의 인접성이라는 지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설명된다. 또한 부산이 선박을 이용한 군 ‘위안부’ 수송에서 위안부로 배치되는 중간 지점 혹은 주요 이동통로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부산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이유에서 경상도 지역의 피해가 컸다고 할 수 있다(정진성, 1998). 이렇게, 경상도 지역의 생존자 출신지의 집중은 일본과의 연관성 속에서 진행된 위안부 동원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 <1-5> 출생지 (국외)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해당없음	188	97.9	97.9	97.9
일 본	3	1.6	1.6	99.5
중 국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1-5>은 외국에서 출생한 생존자의 경우를 나타낸다. 일본과 중국 출신의 생존자도 네 명 보고되고 있어서 당시의 지역 이동, 특히 일본에서 거주했던 조선인의 존재를 드러낸다.

<1-6> 현 거주지(국내)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해당없음	62	32.3	32.3	32.3
서울특별시	24	12.5	12.5	44.8
대구광역시	8	4.2	4.2	49.0
부산광역시	7	3.6	3.6	52.6
울산광역시	2	1.0	1.0	53.6
광주광역시	2	1.0	1.0	54.7
인천광역시	6	3.1	3.1	57.8
대전광역시	4	2.1	2.1	59.9
경기도	20	10.4	10.4	70.3
충청남도	6	3.1	3.1	73.4
충청북도	5	2.6	2.6	76.0
강원도	2	1.0	1.0	77.1
경상남도	18	9.4	9.4	86.5
경상북도	15	7.8	7.8	94.3
전라남도	5	2.6	2.6	96.9
전라북도	6	3.1	3.1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1-6>은 생존자들의 현 거주지를 나타내고, 여기서 ‘해당없음’은 사망자의 경우이다. 여기에서 보면, 생존자들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전체의 22.9%(30명)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경상남도과 경상북도 지역에 17.2%(33명)가 거주하는데, 여기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합하면 전체 생존자의 26%(50명)가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출신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군 ‘위안부’ 생존자들은 서울.경기 등 대도시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충청도(7.8%; 15명), 전라도(5.7%; 11명), 강원도(1.0%; 2명)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1-7> 현 거주지(국외)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해당없음	189	98.4	98.4	98.4
태 국	1	.5	.5	99.0
미 국	1	.5	.5	99.5
중 국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해외에 거주하는 생존자들도 있다. 표 <1-7>에서 보면 태국, 미국, 중국에 거주하는 생존자가 각각 1명 씩 나타난다. 여기서 태국과 중국의 경우는, 군 ‘위안부’ 피해의 연속으로 종전 후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된 디아스포라(Diaspora)의 상태를 알리고 있다. 현재 외국에 잔류하는 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조사는 국내에서 수집된 증언만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 잔류하는 생존자들을 포괄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sup>1)</sup>

- 
- 1) 한국인 군위안부의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해서는 중국에 잔류한 생존자의 증언집 (정대협&정신대 연구소, 1995) 및 기소장 부록2(2000)를 참조할 것..

<1-8> 현 거주지 (시,군)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해당없음	115	59.9	59.9	59.9
평택시	2	1.0	1.0	60.9
부천시	4	2.1	2.1	63.0
보령시	1	.5	.5	63.5
안동시	2	1.0	1.0	64.6
속초시	1	.5	.5	65.1
포항시	2	1.0	1.0	66.1
청주시	1	.5	.5	66.7
광주군	6	3.1	3.1	69.8
성남시	2	1.0	1.0	70.8
과주시	1	.5	.5	71.4
고양시	1	.5	.5	71.9
여주군	1	.5	.5	72.4
동두천시	1	.5	.5	72.9
서산시	2	1.0	1.0	74.0
당진군	2	1.0	1.0	75.0
연기군	1	.5	.5	75.5
음성군	2	1.0	1.0	76.6
영동군	1	.5	.5	77.1
보은군	1	.5	.5	77.6
통영시	3	1.6	1.6	79.2
거창시	1	.5	.5	79.7
마산시	5	2.6	2.6	82.3
양산시	1	.5	.5	82.8
고창군	1	.5	.5	83.3
합천군	2	1.0	1.0	84.4
영천시	1	.5	.5	84.9
경주시	2	1.0	1.0	85.9
예천시	1	.5	.5	86.5

표<1-8> 다음장으로 이어짐

경산시	1	.5	.5	87.0
정주시	1	.5	.5	87.5
신안군	1	.5	.5	88.0
무안군	1	.5	.5	88.5
장흥군	1	.5	.5	89.1
해남군	1	.5	.5	89.6
익산시	2	1.0	1.0	90.6
남원시	1	.5	.5	91.1
군산시	1	.5	.5	91.7
영양군	3	1.6	1.6	93.2
수원시	1	.5	.5	93.7
원주시	1	.5	.5	94.3
산청군	2	1.0	1.0	95.3
김해시	1	.5	.5	95.8
창녕군	1	.5	.5	96.4
거제시	2	1.0	1.0	97.4
충무시	1	.5	.5	97.9
의령군	1	.5	.5	98.4
영일군	1	.5	.5	99.0
부평시	1	.5	.5	99.5
무주군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1-8>는 현 거주지를 시 군별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해당없음’이란 사망자와 알 수 없음을 포함시키는데, 그 수가 60% (115명)정도이므로 분포지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군 ‘위안부’ 신고

<1-9> 신고 시기는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과약불가	15	7.8	7.8	7.8
1989년	1	.5	.5	8.3
1990년	1	.5	.5	8.8
1991년	8	4.2	4.2	13.0
1992년	82	42.7	42.7	55.7
1993년	44	22.9	22.9	78.6
1994년	12	6.3	6.3	84.9
1995년	4	2.1	2.1	87.0
1996년	5	2.6	2.6	89.6
1997년	3	1.6	1.6	91.1
1998년	5	2.6	2.6	93.8
1999년	6	3.1	3.1	96.9
2000년	3	1.6	1.6	98.4
2001년	3	1.6	1.6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1-9>은 군 ‘위안부’ 신고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볼 때, 1992년과 1993년에 전체의 65.6%(129명)가 집중되어 있고 1991-1994년과 같이 군 ‘위안부’ 관련 사회운동이 비교적 초기단계에 있을 때 군 ‘위안부’ 신고가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전체의 76.1%; 146명). 1991년 8월 최초로 김학순 씨가 자신이 한국인 ‘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하고, 사회적 관심과 일본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높아진 시기에 많은 생존자들이 신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피해여성이 자신을 공개할 수 있는 맥락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1995년 이후에도 매년 꾸준히 신고자가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생존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1993년이래 시행되는 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체제도 이와 같은 신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된다.

<1-10> 군 '위안부' 신고를 한 단체 (괄호 안은 비율, %)

	정부	정대협	유족회	시민모임
그렇다	152 (79.2)	39 (20.3)	39 (20.3)	7 (3.6)
아니다	40 (20.8)	153 (79.7)	153 (79.7)	185 (96.4)
Total	192(100.0)	192(100.0)	192(100.0)	192(100.0)

표 <1-10>은 군 '위안부' 신고를 어디에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복수응답이 가능하였으므로, 신고한 단체를 모아서 작성하였다. 그 결과, 생존자의 79.2%(152명)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대협과 유족회에 각각 20.3%(39명)의 생존자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민모임에 신고한 경우도 3.6%(7명) 발견된다.

### 1-3. 본인 기초사항

#### <1-11> 본인의 학력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과약불가	51	26.6	26.6	26.6
무 학	79	41.1	41.1	67.7
야 학	8	4.2	4.2	71.9
소학교 중퇴	37	19.3	19.3	91.1
소학교 졸업	10	5.2	5.2	96.4
상급학교 진학	3	1.6	1.6	97.9
기 타	4	2.1	2.1	100.0
Total	192	100.0	100.0	

생존자들의 학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학과 야학이 전체의 45.5%(87명)를 차지하며, 과약불가 경우 26.6%(51명)를 제외하면 그 비율이 약 62%로 늘어난다. 무학과 야학에 소학교 중퇴를 포함시키면 전체의 64.8%(124명)에 해당하며, 과약불가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의 88%에 해당한다. 소학교를 졸업했거나 상급학교를 진학했던 여성은 5%(13명)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대다수의 군 '위안부' 생존자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야학 혹은 소학교 중퇴와 같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학력이 굳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당시 소학교 진학률이 19.9%이며 여성의 진학률은 더 낮았다고 할 때, 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학력은 당시의 여성의 학력의 경향과 오히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정진성, 1998; 기소장, 2000: 5-6). 여기에서 위안부 동원이 특별히 하층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뒤의 분석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1-12> 본인의 종교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파악불가	88	45.8	45.8	45.8
불 교	23	12.0	12.0	57.8
개신교	32	16.7	16.7	74.5
카톨릭	11	5.7	5.7	80.2
무 속	1	.5	.5	80.7
무	36	18.8	18.8	99.5
기 타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생존자의 종교는 기독교(개신교와 카톨릭 포함)와 불교가 다수로 나타난다. 파악불가의 88경우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각각 41.3%(43명), 22.1%(23명)에 달한다. 하지만,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은 경우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비율이 약 32%(36명)가 된다.

<1-13> 본인의 형제, 자매 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파악불가	52	27.1	27.1	27.1
2명	15	7.8	7.8	34.9
3명	23	12.0	12.0	46.9
4명	19	9.9	9.9	56.8

표<1-13> 다음장으로 이어짐

5명	30	15.6	15.6	72.4
6명	21	10.9	10.9	83.3
7명	13	6.8	6.8	90.1
8명	7	3.6	3.6	93.7
9명	2	1.0	1.0	94.8
10명	2	1.0	1.0	95.8
11명	3	1.6	1.6	97.4
12명	1	.5	.5	97.9
무남독녀	3	1.6	1.6	99.5
교아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형제 자매의 수를 조사한 결과, 표 <1-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5명, 3명, 6명, 4명의 순으로 많이 나타난다. 형제수가 7명에서 12명인 경우까지 있어서, 당시의 다자녀 출산의 경향이 엇보인다.

<1-14> 본인의 자매, 형제 순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과약불가	64	33.3	33.3	33.3
첫 째	26	13.5	13.5	46.9
장 녀	20	10.4	10.4	57.3
둘 째	25	13.0	13.0	70.3
차 녀	6	3.1	3.1	73.4
셋 째	16	8.3	8.3	81.8

표<1-14> 다음장으로 이어짐

넷 째	13	6.8	6.8	88.5
다섯째	5	2.6	2.6	91.1
여섯째	1	.5	.5	91.7
막 내	16	8.3	8.3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1-14>은 생존자 본인의 형제 순위를 나타내는데,<sup>2)</sup> 첫째 및 장녀의 경우가 23.9%(46명)로, 둘째 및 차녀가 16.1%(31명)로 전체 생존자의 40%(77명)를 차지한다. 파악불가의 64경우를 제외하면 장녀와 차녀의 비율은 각각 36%, 24% 정도가 되고, 합하면 전체의 60%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존자들의 형제순위가 장녀, 차녀, 첫째, 둘째에 집중된 것은 우선 인구학적으로 장녀, 차녀 등의 인구수가 삼녀, 사녀 등에 비해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녀가 젊어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는 이후에 살펴본 군 ‘위안부’의 동원 명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 여기서 첫째, 장녀, 둘째, 차녀 등은 증언 및 조사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장녀일 경우에도 형제 순위에서 첫째가 아닐 수 있고 증언시 첫째라고 하여도 그것이 남녀를 분리해서 첫째인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형제순위의 대략을 보여준다.

#### 1-4. 소결 및 제언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발견과 제안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존상태에서 볼 때, 지난 10여 년 간 생존자의 30%(60명) 정도가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령의 생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사 가능한 생존자도 전체의 64%(123명)에 그치고 있어 현재에도 조사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 및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연구에의 박차와 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고령여성들에 대한 배려 및 치유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이 요청되며 이를 수행할 전문 요원의 양성도 필요하다.

둘째, 생존자들의 출생연도는 1910년부터 1934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 중 1921-1930년 출생자가 77.1%(148명)를 점할 정도로 절대다수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졌다는 점과 동시에 1920년대 생들이 10대, 20대의 여성이었던 1930-40년대에 '위안부' 동원이 가세되었다는 경향을 말해준다.

셋째, 생존자들의 출생지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경상도 지역 출신의 생존자가 전체의 55.7%(106명)인 것으로 보아, 경상도 지역의 군 '위안부' 동원이 극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라도 지역 출신 생존자가 그 다음 순(36명)이다. 이것은 군 '위안부' 동원에 있어서 경상도 및 전라도 지역이 가지는 일본과의 인접성이라는 지리적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나타낸다.

넷째, 군 '위안부' 신고의 시기는 1992년과 1993년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루어진다. 정부에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고(152경우), 정대협과 유족회에 한 경우가 동수(39경우)로 나타나며, 시민모임에 신고한 생존자도 있었다(7경우).

다섯째, 생존자들의 학력은 무학 41.1%(79명), 야학 4.2%(8명) 및 소학교 중퇴 19.3%(37명)가 대다수를 점할 정도로 매우 낮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을 감안한다면, 생존자 여성들의 교육이 특별히 더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장. 군 '위안부' 동원 전 상황

## 2. 군 위안부 동원 전 상황

### 2-1. 부모의 상황

#### <2-1> 군 위안부로 갈 때 부모 생존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부모둘다 생존	117	60.9	60.9	60.9
부 생존	16	8.3	8.3	69.3
모 생존	26	13.5	13.5	82.8
부모둘다 사망	9	4.7	4.7	87.5
파악불가	24	12.5	12.5	100.0
Total	192	100.0	100.0	

군 '위안부'로 동원되기 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원 당시 부모의 생존 여부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표 <2-1>처럼 부모 모두 생존해 있던 경우가 60.9%(117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어머니만 생존하는 경우가 13.5%(26명), 아버지만 생존하는 경우가 8.3%(16명)로 각각 나타났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4.7%(9명)에 그친다. 이것은 위에서 본 형제순위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장녀 혹은 첫째, 차녀 혹은 둘째라는 형제순위로 볼 때, 이 여성들이 군 '위안부'로 동원될 당시 부모가 아직 돌아가실 연령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부모 생존의 경향은 군 '위안부' 동원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위안부 동원의 내막을 속이고 있거나, 무력으로 그것을 강제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딸의 군 '위안부' 동원에 무력한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2-2> 아버지의 생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과약불가	86	44.8	44.8	44.8
농사 (소작)	49	25.5	25.5	70.3
남의 집 (중살이, 머슴, 남의 품)	10	5.2	5.2	75.5
쟁이(미쟁이, 나전칠기, 목수)	8	4.2	4.2	79.7
건축업	1	.5	.5	80.2
독립운동	2	1.0	1.0	81.3
노동 (잡역부, 막노동)	3	1.6	1.6	82.8
장사(정미소, 고물상, 밥, 생선, 엿, 술)	9	4.7	4.7	87.5
학교 소사	1	.5	.5	88.0
운수업(운전수, 기관사)	2	1.0	1.0	89.1
행정직원(반장)	1	.5	.5	89.6
서당선생	1	.5	.5	90.1
종교인 (무속인, 목사)	2	1.0	1.0	91.1
선 장	1	.5	.5	91.7
지 주	4	2.1	2.1	93.7
여 관	2	1.0	1.0	94.8
전기기사	1	.5	.5	95.3
한복집	1	.5	.5	95.8
날품팔이	2	1.0	1.0	96.9
행상(장돌뱅이)	2	1.0	1.0	97.9
어 부	2	1.0	1.0	99.0
누에고치검사	1	.5	.5	99.5
양조장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2-2>는 군 ‘위안부’로 동원될 당시, 아버지의 생업활동을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분류방식과 다르다. 또한 1930-40년대의 직업이 현재의 그것과도 그 종류 및 성격에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볼 때, 파악불가의 경우를 제외하면 농사가 아버지의 직업의 대다수인 46.2%(49명)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남의집 살이 9.4%(10명), 장사 8.5%(9명), 미쟁이, 나전칠기, 목수와 같은 수공업적 생산 7.5%(8명)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아버지가 지주인 경우도 4경우가 있으며, 이외에도 행정직원 1명, 서당선생 1명, 종교인 2명과 같이 경제.문화적으로 상층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족의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아버지 직업의 분포는 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의 계급적 배경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먼저, 이들의 계급적 배경이 주로 ‘하층’ 여성이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제시기의 연구에 따르면, 압도적인 다수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1920년에 91.5%, 1933년에 80.5%, 1940년에 83.0%) (이정옥, 1990; 정진성 1998). 이러한 상황에는 식민지라는 사회조건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은 국가부문의 직종 뿐 아니라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등의 직종에서는 거의 배제되었고 조선인은 비 농업 부문 중에서 종사하는 업종은 주로 주변적인 직업 부문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정옥, 1990). 또한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조선의 농촌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몰락하고 소작농으로의 전화 및 분화현상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1929년 전체 농가의 45.6%이던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비율이 1930년대 52%로 증가하고, 1936년 말 경 지면적 5단보 미만인 자와 농업노동자가 114만 822호로서 전체 농가 호수 중 55.4%를 차지하면서 농촌의 반봉건적 생산관계가 지속되게 된다고 지적된다.(이만열, 1997: 76).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피폐한 농촌경제는 후술할 군 ‘위안부’ 취업사기 동원의 배경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표 <2-2>에서 농업 부문에의 종사자가 다수이지만 당시 조선의 평균 농업 종사의 비율에 오히려 못 미칠 정도라는 점이 주목된다. 오히려 이 표에서는 농업 이외에도 남의 집 살이와 같은 신분적 연속관계, 막노동 및 행상과 같은 잡역 직

중 등 주변화된 직업군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조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제한성 속에서 농촌인구가 다수를 점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할 때, 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의 계급적 배경이 당시 조선인의 계급적 상황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는 식민지 시기 직업과 계급 분석을 통해 더욱 규명해 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조선에서의 군 '위안부' 동원이 특정하게 하층 계급을 대상으로 주위 깊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극소수의 상층을 제외한 조선의 전 계층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달리 표현한다면, 당시의 절대다수 조선인 자체가 이미 경제·정치적으로 하층 집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2-3> 어머니의 생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과약불가	124	64.6	64.6	64.6
남의 집	9	4.7	4.7	69.3
행 상	2	1.0	1.0	70.3
날품팔이	5	2.6	2.6	72.9
장 사	9	4.7	4.7	77.6
공 장	2	1.0	1.0	78.6
농 사	30	15.6	15.6	94.3
바느질	7	3.6	3.6	97.9
한복집	1	.5	.5	98.4
무속인	1	.5	.5	99.0
어 업	1	.5	.5	99.5
약 사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어머니의 직업에서는 과약불가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증언의 조사시 어머니 직업에 관해 조사되지 않았거나 생존자가 언급하지 않았음을 나타낸

다. 파악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율을 따져보면, 농사가 44.1%(30명), 남의 집(살이)이 13.2%(9명), 장사가 13.2%(9명), 날품팔이가 7.4%(5명)의 순서를 차지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 직업의 경향과 대체로 일치하여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편, 바느질, 한복집과 같은 여성적인 직종이 나타나며, 아버지 직종에서 보이는 수공업적 생산직종은 나타나지 않는다.<sup>3)</sup> 이렇게 볼 때, 어머니의 직업을 통해서도 앞에서 지적한 군 ‘위안부’의 계급적 배경과 마찬가지로의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2-4> 기타 가족의 생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파악불가	177	92.2	92.2	92.2
농 사	7	3.6	3.6	95.
남의집(머슴,종업원)	3	1.6	1.6	97.4
장사(생선,떡)	2	1.0	1.0	98.4
학교교사	1	.5	.5	99.0
학 생	2	1.0	1.0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2-4>는 부모 외의 가족원의 생업활동을 알아본 것이다. 이 결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파악불가를 합한 경우가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여타 가족원이 농사와 남의집살이를 주요 생업활동으로 하였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정옥(1990)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여성의 농업종사는 조선인 남성에 비해 오히려 높았으며 (1920년에 한국인 여성은 93.3%, 1940년에 89.7%), 비농업부문에서도 성별 민족별 분절화가 뚜렷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농업 부분의 조선인 여성의 직종은 크게 1) 섬세한 솜씨를 요하는 제사업, 피복에 관한 직종, 단순사무직 등, 2) 가사노동이나 가내 서비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직종, 3) 여성의 성(sexuality)에 의존하는 직종들로 대별된다고 한다.

## 2-2. 본인의 상황

### <2-5> 군 ‘위안부’로 갈 당시 결혼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미 혼	167	87.0	87.0	87.0
결 혼	11	5.7	5.7	92.7
이혼(쫓겨남)	7	3.6	3.6	96.4
과 부	1	.5	.5	96.9
사실혼(동거)	1	.5	.5	97.4
과약불가	4	2.1	2.1	99.5
기 타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이제부터는 군 ‘위안부’ 동원 당시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5>은 동원 당시 결혼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혼자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군 ‘위안부’ 동원이 ‘처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일반적 인식과 일치한다. 동시에 결혼경험이 있던 여성도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혼, 이혼, 과부, 사실혼과 같이 결혼경험이 있던 여성들을 합하면 전체의 10.3% (20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군 ‘위안부’ 동원이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미혼자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앞서 계급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안부가 조심스럽게 선정되었다기보다는 젊은 조선인 여성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행해진 경향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후술할 바와 같이, 대다수 군 ‘위안부’ 동원이 취업사기였다는 점에서 볼 때,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필요가 군 ‘위안부’ 동원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6> 결혼했을 당시 자식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 다	5	2.6	2.6	2.6
없 다	22	11.5	11.5	14.1
해당없음	165	85.9	85.9	100.0
Total	192	100.0	100.0	

군 '위안부' 동원 당시 자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해당없음, 즉 미혼자로서 보고되지만 자식이 있었던 경우도 2.6%(5명) 나타난다. 이는 결혼을 하였을지라도 자식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군 '위안부'로 간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을 말한다. 하지만 5명이 적은 숫자라고 해서 이들이 어머니로서 겪은 피해가 한국인 군 '위안부' 피해에서 간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2-7> 군 위안부 연행 당시 하던 일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가 사	96	50.0	50.0	50.0
공 장	20	10.4	10.4	60.4
식모(보모)	26	13.5	13.5	74.0
농 사	5	2.6	2.6	76.6
접대업(식당 일,기생집)	9	4.7	4.7	81.3
기 타	10	5.2	5.2	86.5
파악불가	20	10.4	10.4	96.9
장 사	1	.5	.5	97.4
학 생	5	2.6	2.6	100.0
Total	192	100.0	100.0	

군 ‘위안부’ 동원 당시 본인이 하던 일을 조사한 결과가 표 <2-7>과 같이 나타난다. 가사가 절반 50%(96명)을 차지하며, 식모/보모 13.5%(26명), 공장 10.4%(20명)이 대다수를 점한다. 이외에는 접대업, 농사, 학생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당시 조선인의 경제상황을 염두에 둘 때, 조선의 일반적인 젊은 여성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집에서 집안 일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나 남의 집 살이나 공장으로 돈을 벌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인 군 ‘위안부’ 여성의 동원이 당시의 ‘평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다. 특히 접대업 등 여성의 성(sexuality)과 관련된 업종과 무관했던 여성들이 절대다수를 점했다는 사실은 군 ‘위안부’ 동원의 기만성과 경제적 필요의 절박성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2-8> 군 ‘위안부’ 연행 당시 가족 동거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가족과 함께	133	69.3	69.3	69.3
가족과 떨어져	48	25.0	25.0	94.3
파악불가	11	5.7	5.7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2-8>은 군 ‘위안부’ 동원시 가족동거 여부를 나타낸다. 그 결과, 가족과 함께 동거했던 여성의 경우가 69.3%(133명)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파악불가를 제외시키면 그 비율은 한층 높아진다. 한편 가족과 떨어져 산 경우도 25%(48명)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 생존 여부 및 본인의 직업에서 드러난 ‘평범함’ 여성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이라는 발견과 연장선상에 있다. 즉 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여성들의 대다수는 부모나 한 쪽 부모가 생존해 있었고, 이들은 가사

일을 돌보거나 공장일 식모 일로 외지에 나와 있었던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의 대다수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에서 위안부 동원에 무력했던 당시의 가족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 2-3 소결 및 제언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점과 제안할 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위안부’ 동원 당시 부모 생존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9%(117명)의 여성들이 부모가 생존해 있던 상태였고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13.5%(26명),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8.3%(16명)를 차지한다. 이런 경우를 모두 합하면 전체의 82.8%(159명)를 차지한다.

둘째, 당시의 아버지의 생업을 조사한 결과, 농업에 종사한 경우가 46.2%(49명)로 나타나고 남의 집 살이가 9.4%(10명), 장사가 8.5%(9명), 수공업적 생산이 7.5%(8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생업 역시 농사를 주종 15.6%(30명)으로 하여,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식민지시기 연구를 배경으로 할 때, 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이 특별히 하층계급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에서 군 ‘위안부’ 동원은 극소수 상층을 제외하고 전 계층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식민지 시기의 한국사회의 산업 및 계급 연구의 정교화를 통해 그 정확도를 더욱 높여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군 ‘위안부’ 동원 당시의 결혼 여부를 조사한 결과 87.0%(167명)가 미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결혼이 5.7%(11명), 이혼이 3.6%(7명), 과부가 0.5%(1명), 사실혼이 0.5%(1명)의 사례를 합하면 전체의 10.3%(20명)를 차지한다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한국에서 군 ‘위안부’ 동원이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미혼자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앞서 지적한대로 군 ‘위안부’ 동원이 특정계층에 조심스럽게 행해졌다기보다는 무차별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넷째, 군 ‘위안부’ 동원 당시 본인이 하던 일이나 가족과의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던 여성은 전체의 69.3%(133명)이며 가족과 떨어져 산 경우는 25.0%(48명)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당시 하던 일은 가사로 보고된 경

우가 50%(96명)이며, 이외에 식모가 13.5%(26명), 공장 일이 10.4%(20명)로 나타난다. 이렇게 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여성들의 대다수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고 있거나 식모나 보모로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노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모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군 ‘위안부’ 동원은 하층이나 특별한 범주의 여성이 아니라 평범한 젊은 조선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3장. 강제 동원 상황

### 3. 강제 동원상황

#### 3-1. 동원 시기

##### <3-1> 군 '위안부' 연행 시기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과약불가	2	1.0	1.0	1.0
1930년	1	.5	.5	1.6
1932년	1	.5	.5	2.1
1933년	3	1.6	1.6	3.6
1934년	1	.5	.5	4.2
1935년	5	2.6	2.6	6.8
1936년	8	4.2	4.2	10.9
1937년 (중일전쟁)	15	7.8	7.8	18.8
1938년	19	9.9	9.9	28.6
1939년	19	9.9	9.9	38.5
1940년	25	13.0	13.0	51.6
1941년	22	11.5	11.5	63.0
1942년 (태평양전쟁)	27	14.1	14.1	77.1
1943년	20	10.4	10.4	87.5
1944년	21	10.9	10.9	98.4
1945년	3	1.6	1.6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3-1>은 군 '위안부'로의 동원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

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30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15년간 군 ‘위안부’ 동원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흔히 1937년 난징 대학살이 일본군 위안소 건설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설명과는 달리 이미 1930년대 초부터 위안소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경향을 살펴보면, 1942년, 1940년, 1941년, 1944년, 1943년, 1938년, 1939년, 1937년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937년부터 1944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군 ‘위안부’ 동원이 분포되어 있다. 편의상 1930-1935, 1936-1940, 1941-1945과 같은 세 기간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전체 동원의 5.7%(11명), 44.8%(86명), 48.4%(93명)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와 같은 동원시기의 경향에서 조선의 군 ‘위안부’ 동원이 일본 제국 주위가 수행한 전쟁의 국면 및 양상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37년 중국 전면전쟁과 함께 발생한 난징 대학살 이후, 일본군의 위안소 건설에 박차가 가해진 상황 속에서 풀이될 수 있다(Yoshimi, 1995: 49-27). 이와 함께 조선은 국민총동원체제에 들어감으로써 각종 법령과 명목으로 조선인 여성들의 동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강만길, 1997; 기소장, 2000; 정진성, 2001 참조). 이와 같은 시기분포는 군 ‘위안부’ 동원이 개인업자나 경제적 동기에 의해 자생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제도적이고 체계적 요소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군 ‘위안부’ 동원이 1930년의 이후 전국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선 여성들이 줄곧 각종 명목으로 군 ‘위안부’ 동원의 가능성 아래 놓여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1937년 이후에는 군 ‘위안부’ 동원의 정도가 한층 심해졌는데, 이것은 군 ‘위안부’로 동원되지 않은 여성의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결혼, 조기 결혼 등 각종 파행적 상태에 놓여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3-2. 동원 주체

<3-2> 군 ‘위안부’ 로 데리고 간 사람 (괄호 안은 비율, %)

	군인 군속	순사	이장 구장	일본인 모집자	한국인 모집자	교사	가족 친지
그렇다	45 (23.4)	45 (23.4)	17 (8.9)	35 (18.2)	64 (33.3)	4 (2.1)	2 (1.0)
아니다	141 (73.4)	141 (73.4)	169 (88.0)	151 (78.6)	122 (63.5)	182 (94.8)	184 (95.8)
파악불가	6 (3.1)						
Total	192 (100.0)						

표 <3-2>는 군 ‘위안부’로 동원주체의 사례수와 192명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때 한국인 모집업자(64경우), 군인/군속(45경우), 순사(45경우), 일본인 모집업자(35경우), 이장/구장(17경우)의 순으로 동원 주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비슷하다.<sup>4)</sup> 하지만, 생존자의 증언에서 실제로 군인/군속과 순사가 뚜렷이 구분되어 기억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 성격상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군인/군속과 순사를 한데 묶는다면 이 범주가 가장 커진다(90경우). 여기에 이장, 구장과 같은 행정직원을 포함시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군 ‘위안부’의 동원은 군관, 경찰과 같은 공적 권력에 의한 경우가 가장 다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조선인 모집업자(64경우)와 일본인 모집업자(35경우) 역시 다수를 이룬다는 점에서 개인업자들의 참여

4) 정진성의 연구(1998)에서도 조선인 민간인이 연행자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음이 경찰, 일본 민간인, 군인, 관리인의 순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경찰을 순사로 바꾸고, 군인과 군속을 한데 묶는다면, 현재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된다. 이렇게 연행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연행자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

도 활발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들 개인업자와 일본 군대 및 국가와의 연결고리의 규명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지적한다. 또한 조선인 모집 관련자들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에 군대, 경찰, 행정직원, 개인업자 뿐만 아니라 교사와 가족, 친지까지 참여하였던 것에서 군 ‘위안부’ 동원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군사적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군 ‘위안부’ 동원의 방식은 이렇게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또 군대, 경찰, 행정, 교육과 같은 국가의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3-3> 군 ‘위안부’로 데리고 간 기타의 대상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주인	2	1.0	1.0	1.0
낯모르는 사람	5	2.6	2.6	3.6
친구(회사동료)	2	1.0	1.0	4.7
스스로 자원	1	.5	.5	5.2
위안부광고를 보고	2	1.0	1.0	6.3
동네 사람	1	.5	.5	6.8
양 부모	2	1.0	1.0	7.8
해당없음	172	89.6	89.6	97.4
기타	3	1.6	1.6	99.0
정신대모집 관계자	2	1.0	1.0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3-3>은 위의 항목 이외에 어떤 군 ‘위안부’ 동원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에서 해당없음은 이러한 항목과 무관한 사례를 의미하고 ‘주인’이란 남의 집 살이나 식당, 술집 등의 주인을 뜻한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군 ‘위안부’

광고를 보고 간 사람(2경우), 혹은 자원한 사람(1경우)도 있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군 '위안부' 동원에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군 '위안부'로 간 사실을 알았던 사람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가족, 친척	61	31.8	31.8	31.8
동네 사람	3	1.6	1.6	33.3
친구	8	4.2	4.2	37.5
아무도 몰랐다	98	51.0	51.0	88.5
주인	1	.5	.5	89.1
파악불가	11	5.7	5.7	94.8
기타	10	5.2	5.2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3-4>는 “당시 군 '위안부'로 간 것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 라는 답변이 51.0%(98명)로 가장 많았으며, 31.8%(61명)이 가족 및 친척이 알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이외에는 기타, 친구, 동네사람, 주인 순으로 나타나지만 그 수는 미미하다. 이 질문의 의미는 군 '위안부'라는 동원의 의미에 대한 인지가 아니라, 어디론가 동원 사실 자체에 대한 인지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간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질문의 의미가 전자로 해석된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어쨌든 군 '위안부' 동원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나 가족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동원이 매우 은밀히 혹은 사적인 관계에서만 말해지고 알려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 3-3 동원 명목과 방식

#### <3-5> 무슨 명목으로 동원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일자리 (공장,간호사)	92	47.9	47.9	47.9
공 부	1	.5	.5	48.4
먹이고 입혀준다	8	4.2	4.2	52.6
정신대 (치녀공출, 근로정신대)	30	15.6	15.6	68.2
아무런 영문 몰랐다	53	27.6	27.6	95.8
훈련시킨다	3	1.6	1.6	97.4
봉사간다	1	.5	.5	97.9
기 타	3	1.6	1.6	99.5
과약불가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3-5>는 동원의 명목을 나타낸다. 조사결과, 일자리가 47.9%(92명) 가장 많았고, '아무 영문 몰랐다'가 27.6%(53명)로 그 다음이며 정신대라는 명목도 15.6%(30명) 나타난다. 한편 '먹이고 입혀준다'는 명목은 당시 한국의 빈곤한 사회상의 반영한다. .아무 영문도 몰랐다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나는 것은 동원의 강제성과 우발성을 시사한다. 또한 '정신대'로 동원되었다는 것은 당시 '정신대'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또 다양한 이름의 정신대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3-6> 동원의 방식 (괄호 안은 비율, %)

	취업사기	유괴 및 납치	인신매매	군관의 압력
그렇다	98(51.0)	65(33.9)	6(3.1)	48(25.0)
아니다	90(46.9)	123(64.1)	182(94.8)	140(72.9)
파악불가	4(2.1)	4(2.1)	4(2.1)	4(2.1)
Total	192(100.0)	192(100.0)	192(100.0)	192(100.0)

동원의 방식에 관해서는 두 항목까지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표 <3-6>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사기를 당한 사례가 9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외 유괴 및 납치가 65명, 납치, 군관의 압력이 48명의 순서로 나타난다. 인신매매의 경우는 6명에 그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취업사기가 군 ‘위안부’ 연행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진성, 1998). 대다수 여성들은 일본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한다거나, 부상병을 간호하는 간호부로 일한다는 등 돈을 벌고 돌아올 수 있다는 말에 군 ‘위안부’ 동원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러한 취업사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조선의 경제적 빈곤상황이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 가족 속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가장 늦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여성’이라고 할 때, 여성을 보다 쉽게 취업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소장 부록 2 참조, 2000). 다른 한편 증언을 통해 볼 때, 여성들이 단순히 ‘돈을 벌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았다기보다는, 협박과 인신매매와 같은 다른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즉 군 ‘위안부’ 모집의 취업사기가 단순한 개인적 사기가 아니라 군과 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언이 많다.<sup>5)</sup>

다음, 유괴 및 납치와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연행도 많이 있다. 여기서 납치란 취업사기와 같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강제로 끌고

5) 예컨대, 김은례(정대협 & 정신대 연구소:1999)와 최화선(정대협 & 정신대 연구소: 1999)의 증언 참조.

가는 경우를 말하며, 유괴는 유혹을 통하여 끌고 간 경우로서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 증언에서 볼 때, 나물 캐는 소녀를 트럭에 싣고 간 경우, 기차 안에서 그냥 끌려간 경우, 서울의 노상에서 끌려간 경우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카라멜’을 준다고, 혹은 ‘쌀밥’을 준다고 하면서 끌고 간 경우는 속임수를 통한 유괴 성격의 연행이라고 할 수 있다(기소장 부록 참조: 2000). 하지만 이러한 연행의 경우에도 순사나 군속에 의한 압력과 무력이 배경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위의 표에서 제시된 범주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납치 및 유괴와 군관의 압력은 많은 증언에서 서로 중복되어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취업 사기 역시 국가적 압력 내지 방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취업사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거짓정보, 정보부재, 정보은폐라는 상황이다. 즉 자신이 취업할 장소, 조건, 책임자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또 거짓으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사기가 10여 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은 식민지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방기 내지 보호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기소장 부록 참조, 2000). 요컨대 군 ‘위안부’ 동원의 방식은 표면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거의 모든 동원에는 국가의 권력과 압력, 극심한 가난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면에서 구조적으로는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군 ‘위안부’ 동원은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피해를 배경으로 하여 일본군과 관, 또 민간업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방법은 사기, 납치, 회유, 유괴, 압력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연행 당시 돈은 받았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받았다	11	5.7	5.7	5.7
아니다	120	62.5	62.5	68.2
모르겠다	4	2.1	2.1	70.3
파악불가	57	29.7	29.7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3-7>은 군 ‘위안부’ 연행 당시 돈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의 결과이다. 표에서 볼 때,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5.7%(11경우)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인신매매의 성격을 가진 동원의 경우, 그 돈은 피해자 여성과는 무관하게 혹은 피해자가 모르는 채 지불되는 경우도 있었다.<sup>6)</sup> 또한 취업의 대가를 선불로 미리 받은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대한 사회적 추궁을 의식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큰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군 ‘위안부’의 피해의 정도를 상쇄할 만큼 받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간의 군 ‘위안부’ 피해조사가 말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돈을 받은 경우, 받은 사람을 살펴보기로 한다.

#### <3-8> 돈을 받은 사람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부모님	5	2.6	2.6	2.6
본인	3	1.6	1.6	4.2
전 남편	1	.5	.5	4.7
주인	1	.5	.5	5.2
해당없음	181	94.3	94.3	100.0
파악불가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3-8>에서 볼 때, 돈을 받은 경우 부모님이 받은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는 앞서 지적한대로 인신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아버지가 판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선불 등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받은 경우가 3명, 전남편과 주인이 각각 1명씩 나타난다.

6) 이에 관해서는 하영이(증언 3집, 1999), 조남례(증언 3집, 1999), 김창연(증언 4집, 2001)의 증언을 참조.

<3-9> 얼마 받았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돈 (1000,24,300, 200원)	4	2.1	2.1	2.1
논 (3, 5마지기)	2	1.0	1.0	3.1
포	1	.5	.5	3.6
모른다	4	2.1	2.1	5.7
해당없음	181	94.3	94.3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3-9>는 돈을 받았을 경우, 얼마나 받았는지를 나타낸다. 조사결과, 돈을 받은 경우가 3명, 논을 받은 경우가 1명, 포(천)를 받은 경우가 1명 나타나고 4명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3-10> 도착지 이동 중 성폭력 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당했다	8	4.2	4.2	4.2
아니다	108	56.3	56.3	60.4
파악불가	76	39.5	39.5	99.5
Total	192	100.0	100.0	

표 <3-10>은 위안소로의 이동 도중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에서 볼 때, 성폭력 경험은 전체의 4.2%(8명)로 나타난다. 파악불가의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동 도중

에서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3-11> 같이 끌려간 사람이 있었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었다	152	79.2	79.2	79.2
없었다.	14	7.3	7.3	86.5
파악불가	26	13.5	13.5	100.0
Total	192	100.0	100.0	

표 <3-11>은 위안소로 이동할 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타낸다. 그 결과, 함께 동원된 사람이 있었던 경우가 79.2%(152명)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없었다는 경우는 7.3%(14명)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군 ‘위안부’ 동원이 집단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조직적 동원의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3-4. 소결 및 제언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점과 제안할 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위안부' 동원 시기를 조사한 결과, 1930년부터 1945년이라는 기간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생존자의 출생시기의 분포와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1937년을 시점으로 하여 군 '위안부' 동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서, 1937년-1944년간의 동원이 전체 생존자의 85.4%(168명)를 차지할 만큼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군 '위안부' 동원은 1937년에 중국전면전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1937년을 계기로 하여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을 선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군 '위안부' 동원이 개인 업자의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체계와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군 '위안부'로 동원한 사람들은 군인/군속이 20.6%(45명), 순사가 20.6%(45명), 이장/구장이 7.8%(17명)로 나타나는 등 국가의 공적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수였다. 한편, 한국인 모집업자에게 동원된 여성이 29.4%(64명)이고 일본인 모집업자에게 동원된 여성은 16.0%(35명)로 상당수 있었다. 이것은 군 '위안부' 연행이 국가와 사적 조직을 통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나타낸다. 한국인 모집업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위안부 동원 및 이송 등에 관련된 한국인들을 발굴·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군 '위안부' 동원방식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취업사기의 경우가 전체 생존자의 절반 가량인 44.2%(98명)임을 알 수 있다. 취업사기 이외에도 유괴 및 납치가 29.4%(65명), 군관의 압력이 21.7%(48명)로 보고된다. 한편, 인신매매는 2.7%(6명)에 그치고 있다. 생존자의 증언에서 볼 때, 취업사기의 경우에도 개인의 속임수라기보다는 군관 및 이장 등의 압력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취업을 빙자한 강제연행'의 성격이 짙다. 또한 군관의 압력에 있어서도 취업을 미끼로 내세운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동원

방식의 범주들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식민지하의 한국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군관 및 관련업자들의 활동이 서로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군 '위안부' 모집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4장. 군 '위안부' 상황

#### 4. 군 '위안부' 상황

##### 4-1. 동원된 지역

###### 【첫 번째 동원】

###### <4-1> 처음 동원된 나라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중 국	44	22.9	22.9	23.4
만 주	51	26.6	26.6	49.5
일 본	24	12.5	12.5	62.0
대 만	17	8.9	8.9	70.8
한 국	3	1.6	1.6	72.4
버어마	9	4.7	4.7	77.1
필리핀	6	3.1	3.1	80.2
싱가포르	15	7.8	7.8	88.0
인도네시아	7	3.6	3.6	91.6
베트남	1	.5	.5	92.1
캄보디아	2	1.0	1.6	93.7
캐롤라인제도	5	2.6	2.6	96.4
남양군도	3	1.6	1.0	97.4
솔로몬제도	1	.5	.5	97.9
파푸아뉴기니	4	2.1	2.1	100.0
Total	192	100.0	100.0	

처음 동원된 지역은 중국(당시 만주 포함)이 49.5%(95명)로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이 20.7%(40명), 일본 12.5%(24명), 대만 8.9%(17명), 캐롤라인 제도 등 태평양지역 6.8%(13명), 한국

1.6%(3명)로 전체적으로 광범하게 나타났다.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은 일본군이 자기 나라를 침략한 후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조선인 피해자들은 일본군의 전쟁 시작과 확대에 따라 국외로 동원된 것이다. 우리와 같은 식민지였던 대만의 경우는 1992년 피해자 54명에 대한 조사에 이동지까지 포함한 분포가 중국 (해남도 14, 광둥성 5), 인도네시아(12), 필리핀(8), 버어마(8), 싱가포르(4), 기타(3)에 불과하다.(婦女救援基金會, 1999)

우리의 경우는 중국의 동북부(후에 만주국이 됨)지역을 침략한 1930년대 초반부터 동원이 시작된 점, 그 후 1937년 중일전쟁으로 본격적인 동원이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과반수 정도가 중국으로 동원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피해자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국 동북부의 경우는 1941년 7월 관동군 특종 연습 때 2만명의 조선인 군 '위안부' 동원 계획을 세웠던 하라(原善四郎)소좌는 조선총독부의 협조로 8월까지 8천명을 중국 동북부(만주)로 동원하였다고 했고 그 부하였던 무라카미(村上貞夫)는 실제 수는 3천이었다고 했다. (吉見義明, 2000)그 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동원이 동년 6월에 계획되어 8월까지 2개월에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 후 일본이 전쟁터를 확대하면서 중국 뿐 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까지 피해자들을 끌고 갔다. 일본군은 전쟁을 해나가면서 성병예방과 현지 여성에 대한 강간 방지책 등을 목적으로 한 위안소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태평양전쟁기인 1942년 9월 3일 육군성 『과장회보(課長會報)』에서 倉木敬次郎 인사국 은상(恩賞)과장은 “장교이하 위안시설을 다음과 같이 만들겠다”고 하였다. “북지(중국 북부) 100개, 중지(중국 중부) 140개, 남지(중국 남부) 40개, 남방(동남아시아) 100개, 남해(태평양지역) 100개, 樺太(사할린), 10개”였다. 그리고 1943년 1월 7일 그 설치 결과를 보고하였다.(『金原摘錄』 1942. 9.3과 1943. 1.7)

동남아시아 중에서 싱가포르 7.8%(15명), 버어마 4.7%(9명)으로 집중된다. 위의 육군성의 위안소 정책과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초기 싱가포르(1942년 2월 15일)와 버어마 (랑군 점령 동년 3월 1일)를 쉽게 점령했고 다른 나라로 계속 침략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이 두 나라에 집중되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특히 버어마의 경우는 연합군 측 자료로 1942년 8월 업자와 함께 여성들 703명이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베트남(1명)과 캄보디아(2명)는 당시 프랑스 식민지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였고 일본군은 식민지 권력과 교섭하여 본격적인 전투없이 진주하였고 일본군의 주둔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위안소가 있었다.

24명이 동원된 일본의 경우는 군수산업(특히 탄광지대)에 산업위안부가 있었고 전역에 군대주둔지가 있어 많은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특히 전쟁말기에는 오키나와 제도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1992년 자료에 의하면 오키나와 제도 전체에 130개 정도의 위안소가 있었다. (第5會 全國女性史研究交流のつどい, 1992)

17명이 동원된 대만의 경우는 중일전쟁 이후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대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이동하기도 했고 태평양전쟁 이후 동남아시아로 가는 부대가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 1938년 11월부터 1941년 7월까지 대만에서 중국으로 도향한 통계에 위안소 관계자가 조선인 534명, 일본인 937명, 대만인 391명으로 파악되었다.(강정숙, 1997 재인용)

태평양지역은 일제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점령해서 남양군도로 명명한 캐롤라인 제도, 마리아나 제도, 마셜군도(괌 제외) 여러 섬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캐롤라인 제도 5명, 남양제도 3명 모두 8명) 파푸아뉴기니로 4명이 솔로몬제도로 1명이 동원되었다.

현지 여성에 대한 강간예방도 군이 주체가 되어 공인된 강간시설인 위안소 정책을 시행한 목적 중의 하나였지만 군인들에게 제도화된 강간시설을 마련해준 사실이 현지 여성들에 대한 강간을 줄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위안소 정책으로 현지여성들에 대한 강간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일본군의 점령지에서는 위안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현지여성들에 대한 강간이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현재 피해자가 22,234명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강간피해까지 포함되어 있다.(한국정신대연구소, 2000)

<4-2> 처음 동원된 나라의 지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알 수 없음	61	31.8	31.8
중국 상 해	3	1.6	1.6
나스메꼬	2	1.0	1.0
왕도진	2	1.0	1.0
소 주	1	.5	.5
무한(한구)	6	3.1	3.1
시코바	1	.5	.5
용 천	1	.5	.5
내몽고(호정)	2	1.0	1.0
항 주	2	1.0	1.0
남 경	4	2.1	2.1
광 동	3	1.6	1.6
천 진	1	.5	.5
해남도	2	1.0	1.0
관 동	1	.5	.5
오 산	1	.5	.5
고스이	1	.5	.5
만주 향 촌	1	.5	.5
대 련	1	.5	.5
용광현	1	.5	.5
해 성	1	.5	.5
하얼빈	9	4.7	4.7
간토성	1	.5	.5
밀 산	1	.5	.5

표<4-2> 다음 장으로 이어짐

자무스	1	.5	.5
길 립	3	1.6	1.6
후라니찌	1	.5	.5
동안성	4	2.1	2.1
호 립	1	.5	.5
봉 천	3	1.6	1.6
훈 춘	1	.5	.5
다이까징(오태성)	1	.5	.5
치치하얼	1	.5	.5
흑 하	1	.5	.5
연 길	1	.5	.5
목단강	3	1.6	1.6
손 오	1	.5	.5
석문자	1	.5	.5
동 녕	1	.5	.5
구 룡	1	.5	.5
창 덕	2	1.0	1.0
흑룡강성	1	.5	.5
지 우	1	.5	.5
일본 히로시마	2	1.0	1.0
요코하마	1	.5	.5
북해도	1	.5	.5
가고도	1	.5	.5
오끼나와(미야고시마)	2	1.0	1.0
시모노세키	2	1.0	1.0

표<4-2> 다음 장으로 이어짐

도야마켄	2	1.0	1.0
오사카	1	.5	.5
동 경	1	.5	.5
나가사키	3	1.6	1.6
와카마야현	1	.5	.5
대 만 다카오(고웅,기룡)	5	2.6	2.6
신 주	2	1.0	1.0
괭호도	1	.5	.5
쇼카(창화)	1	.5	.5
따 쿡	1	.5	.5
한국 임진강부근	1	.5	.5
평안도	1	.5	.5
부 산	1	.5	.5
인도네시아 몰루카제도(할마헤라)	1	.5	.5
뉴기니섬	1	.5	.5
수마트라섬	2	1.0	1.0
수마트라섬 팔렘방	1	.5	.5
자바섬 수라바야	1	.5	.5
버어마 랑군	4	2.1	2.1
필리핀 다바우	2	1.0	1.0
마닐라	1	.5	.5
캄보디아 푸놈웬	1	.5	.5
베트남 사이공	1	.5	.5
캐롤라인제도 트루크섬	1	.5	.5
팔라우섬	4	2.1	2.1
티니안	1	.5	.5
솔로몬 제도 라보크섬	1	.5	.5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2	1.0	1.0
Total	192	100.0	100.0

표 <4-2>를 보면 동원된 나라의 지명을 보더라도 한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무한 2명과 무한의 한 도시인 한구가 4명으로 조사되어 합하면 6명이 무한 지역에 모여있었다. 무한의 한구는 육군 병참에서 업자를 동원해서 만든 세끼리(積慶里) 특수위안소가 있었던 곳이다.(한구에는 1938년 11월 30채의 위안소와 300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무한의 다른 도시인 무창에도 위안소 20채에 위안부 약 200명이 있었다. 長澤建一, 1992) 그리고 남경이 4명, 상해와 광둥이 각각 3명이었다. 중국 동북부(만주)의 경우에는 하얼빈이 9명으로 많았는데 여기는 관동군 사령부가 있었다. 그 외 동안성 4명, 길림, 봉천, 목단강이 각각 3명이었다.

일본은 나가사키 3명, 히로시마, 오키나와, 시모노세키, 도야마정에 각각 2명이 동원되었다. 대만은 가오슝(高雄)에 5명이 모여있었다. 한국에 있었던 경우는 임진강 부근, 평안도, 부산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의 경우 제 1 위안소와 제 2 위안소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증언집 1의 윤두리)

동남 아시아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수마트라섬(3명), 자바섬(1명) 등으로 동원되었다. 태평양 지역에서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섬으로 4명이 동원되었다. 그것은 팔라우제도의 코롤섬에 남양청(南洋廳, 1922년 설치)이 있었기 때문이다. 2명이 동원된 파푸아뉴기니의 라바울은 남태평양의 최대 전략기지였다.

이처럼 널리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지역적 분포가 일본군이 침략전쟁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처음 동원된 이후 다른 나라 혹은 지역으로 이동된 경우】

### 처음 이동

처음 동원된 지역에서 이동하지 않은 경우가 62%(119명)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38%(73명)는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국경을 넘어 이동하였다. 처음 이동한 경우 중 두 번째 이동하지 않은 경우만(48명)으로 보았을 때 국내 이동이 17명, 국외이동이 31명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만주와 중국은 같은 나라에서 이동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국외이동은 주로 중국과 대만에서 동남아시아로, 동남아시아 내에서, 태평양제도 내에서 이동한 것이었다.

### 두 번째 이동

전체에서 두 번째까지 이동한 경우는 13%(25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처리를 위해 두 번째 이동한 것까지 조사한 것이고 실제로 부대를 따라 계속 이동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밝힌다. 첫 번째 이동한 경우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두 번째까지 이동하였다.(73명 중 25명)

두 번째까지 이동한 25명은 10명이 국내 이동을 했고 15명은 국외 이동을 했다. 국내 이동은 중국(만주 포함)이 7명으로 많았고 국외 이동의 경우는 주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와 동남아시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였다.

이러한 이동의 이유는 군 직영 위안소의 경우 일본군의 침략전쟁 확대에 따라 부대를 따라 이동했거나 또는 동원된 지역에 위안소가 너무 많은 경우 새로운 수요를 찾아 군과 연결되어 업자가 움직인 것이다. 일본군은 각지의 사정과 일본군 부대규모를 감안하여 위안소 설립계획을 세웠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으로 도향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1942년 1월부터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으로 갈 경우 여권 없이 군의 증명서만으로 가능해졌는데 그 만큼 군의 세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전쟁 상황에서 업자들과 ‘위안부’의 이동 역시 군의 통제하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던 것이다.

<4-3> 이동한 첫 번째 나라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중 국	24	13.0	13.0	13.0
만 주	6	2.6	2.6	15.6
일 본	6	3.1	3.1	18.7
대 만	2	1.0	1.0	19.7
한 국	1	.5	.5	20.2
인도네시아	6	3.1	3.1	23.3
버어마	5	2.6	2.6	25.9
필리핀	4	2.0	2.0	27.9
싱가포르	5	2.6	2.6	30.5
말레이시아	2	1.0	1.0	31.5
태 국	3	1.6	1.6	32.1
베트남	2	1.0	1.0	33.1
캄보디아	1	.5	.5	33.6
남양군도	3	1.6	1.6	35.2
캐롤라인제도	1	.5	.5	35.7
마리아나제도	2	1.0	1.0	36.7
과약불가	119	62.0	62.0	100.0
Total	192	100.0	100.0	

<4-4> 첫 번째 이동한 나라의 지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해당없음	119	62.0	62.0
모르겠다	23	12.0	12.0
중국 기 쏘	1	.5	.5
석가장	1	.5	.5
북 경	1	.5	.5
진 송	2	1.0	1.0
해남도	1	.5	.5
광 동	2	1.0	1.0
산동성	1	.5	.5
홍콩(해름)	4	2.1	2.1
한 구	1	.5	.5
남 경	2	1.0	1.0
서 주	1	.5	.5
제 남	1	.5	.5
태 원	1	.5	.5
태 국	1	.5	.5
요로도	1	.5	.5
만주 장 춘	1	.5	.5
간 도	1	.5	.5
목단강	1	.5	.5
해 성	1	.5	.5
훈 춘	1	.5	.5
일본 오사카	1	.5	.5
시즈오카경	1	.5	.5
나가노	1	.5	.5
히로시마	1	.5	.5
대만 가오슝	2	1.0	1.0
한국 대동강	1	.5	.5

표<4-4> 다음 장으로 이어짐

인도네시아 뉴기니섬	1	.5	.5
수마트라섬 팔렘방	2	1.0	1.0
수마트라섬	1	.5	.5
쿠타라차	1	.5	.5
버어마 랑군	2	1.0	1.0
필리핀 마닐라	3	1.6	1.6
말레이시아 우들랜드	1	.5	.5
베트남 사이공	1	.5	.5
하이퐁	1	.5	.5
캄보디아 프놈펜	1	.5	.5
남양군도 아깁	1	.5	.5
캐롤라인제도 팔라우섬	1	.5	.5
로타섬	1	.5	.5
Total	192	100.0	100.0

<4-5> 두 번째로 이동한 나라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해당없음	167	87.0	87.0	87.0
중 국	8	4.2	4.2	91.1
일 본	4	2.1	2.1	93.2
인도네시아	5	2.6	2.6	95.8
버어마	2	1.0	1.0	96.9
필리핀	1	.5	.5	97.4
싱가포르	3	1.6	1.6	99.0
말레이시아	1	.5	.5	99.5
태 국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4-6> 두 번째로 이동한 나라의 지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해당없음	167	87.0	87.0
모르겠다	5	2.6	2.6
중국 다이징	1	.5	.5
석가장	1	.5	.5
북 경	2	1.0	1.0
팔도구	1	.5	.5
광 동	1	.5	.5
조 왕	1	.5	.5
일본 히로시마	1	.5	.5
사할린	1	.5	.5
큐 슈	1	.5	.5
오끼나와	1	.5	.5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1	.5	.5
자바섬	2	1.0	1.0
자바섬 수라바야	1	.5	.5
버어마 랑 군	1	.5	.5
필리핀 마닐라	1	.5	.5
말레이시아 그루양	1	.5	.5
태국 트랑라농	1	.5	.5
Total	192	100.0	100.0

4-2. 위안소 시설

<4-7> 위안소 시설형태 (괄호 안은 비율, %)

	처음 동원	처음 이동	두 번째 이동
민 가	55 (28.7)	21 (10.9)	10 (5.2)
상 가	5 (2.6)	2 (1.0)	0
호텔, 학교등시설	6 (3.1)	3 (1.6)	2 (1.0)
군에서 새로 지은 건물(천막,막사)	76 (39.6)	16 (8.3)	2 (1.0)
기 타	15 (7.8)	4 (2.1)	1 (.5)
모르겠다	34 (18.2)	27 (14.1)	10 (5.2)
해당없음	0	119(62.0)	167 (87.1)
Total	192 (100.0)	192 (100.0)	192 (100.0)

<4-8> 위안소 시설형태 (해당없음 제외)

	Frequency	Percent
민 가	86	29.9
상 가	7	2.4
호텔, 학교 등 시설	11	3.8
군에서 새로 지은 건물(천막,막사)	94	32.4
기 타	20	6.9
모르겠다	71	24.6
Total	290	100.0

처음 동원된 나라와 이동한 경우를 모두 합하여 표를 만들고 이들 중 해당없

음을 제외한 것이 표 <4-8>이다. 이것에 의하면 군에서 새로 지은 건물(천막, 막사 등)에 32.4%(94경우), 민가 29.9%(86경우)로 나타났다. 주로 군인들이 새로 짓거나 현지인들이 살던 민가를 위안소 건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군 위안소 제도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현지 군사령부 후방참모, 병참의 위안계(慰安係), 사단.연대의 부관(副官), 헌병대 등에서 담당했다. 군 직영 위안소는 전면적으로 관리했고 업자를 선정해서 한 군 전용 위안소의 경우에도 군에서 감독.통제하였다. 위안소 건물은 군이 제공했고 위안소 규칙, 이용요금, 이용시간, 각 부대 이용일 지정, 위생관리 내용도 군이 결정했다.

4-3. 위안소 주인 혹은 관리자

<4-9> 위안소 주인 (괄호 안은 비율, %)

	처음 동원	처음 이동	두번째 이동
일본인 민간인	56 (29.2)	14 (7.3)	11 (5.7)
조선인 민간인	34 (17.7)	14 (7.3)	3 (1.6)
부대(군인, 군속포함)	32 (16.6)	11 (5.7)	3 (1.6)
기 타	5 (2.6)	1 (.5)	1 (.5)
모르겠다	65 (33.9)	33 (17.2)	7 (3.6)
해당없음	0	119 (62.0)	167 (87.0)
Total	192 (100.0)	192 (100.0)	192 (100.0)

<4-10> 위안소 주인 (해당없음 제외)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일본인 민간인	81	27.9	27.9	27.9
조선인 민간인	51	17.6	17.6	45.5
부대(군인,군속)	46	15.9	15.9	61.4
기 타	7	2.4	2.4	63.8
모르겠다	105	36.2	36.2	100.0
Total	290	100.0	100.0	

위안소 주인 혹은 관리자를 물었다. 피해자들이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는 경우라도 관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면 위안소 종류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주인인 군 전용 혹은 군 이용 위안소에 군인이 관리를 맡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동한 경우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바뀐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각각의 경우로 감안해서 해당없음을 제외하여 표<4-10>으로 만들어보았다. 그중 민간인이 주인인 경우가 45.5%(132 경우), 부대(군인, 군속)가 주인인 경우는 15.9%(46 경우)로 조사되었다. 군대가 직접 운영한 군 직영 위안소보다 업자를 이용한 군 전용 위안소가 3배정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군은 업자를 선정하여 위안소를 개설하도록 허가했고 누가 군 위안소를 이용했는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민간인이 주인인 경우,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약 1.5배정도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을 모든 경우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1941년 관동군 특별 연습 때 ‘위안부’ 동원 계획을 세웠던 하라(原善四郎)소좌의 부하였던 무라카미(村上貞夫)의 편지에도“위안소 업자는 일본인인데 약간의 조선인이 포함되어 활약하고 있다”고 되어있다.(자료1 關東軍のよる「慰安婦」動員に關する手紙, VAWW-NET Japan, 2000)

4-4. 동 료

<4-11> 위안소 동료 (괄호 안은 비율, %)

	처음 동원	처음 이동	두번째 이동
조선인	109 (56.8)	23 (11.9)	9 (4.7)
조선인과 일본인	11 (5.7)	4 (2.0)	1 (.5)
조선인과 중국인	0	2 (1.0)	0
조선인과 대만인	0	1 (.5)	0
조선인과 남양원주민	1 (.5)	0	0
조선인과 베트남인	0	1 (.5)	0
조선인과 인도네시아인	0	0	1 (.5)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2 (1.0)	0	0
조선인, 일본인, 대만인	1 (.5)	0	0
조선인, 일본인, 기타여성	0	1 (1.0)	0
일본인	2 (1.0)		0
흑인 여성	0	1 (.5)	0
기타 여성	2 (1.0)	1 (.5)	0
파악불가	64 (33.3)	39 (20.2)	14 (7.3)
해당없음	0	119 (61.9)	167 (87.0)
Total	192 (100.0)	192 (100.0)	192 (100.0)

<4-12> 위안소 동료 (해당없음제외)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조선인	141	48.6	48.6	48.6
조선인과 일본인	16	5.5	5.5	54.1
조선인과 중국인	2	.7	.7	54.8
조선인과 대만인	1	.3	.3	55.1
조선인과 남양원주민	1	.3	.3	55.4
조선인과 베트남인	1	.3	.3	55.7
조선인과 인도네시아인	1	.3	.3	56.0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2	.7	.7	56.7
조선인, 일본인, 대만인	1	.3	.3	57.0
조선인, 일본인, 기타여성	1	.3	.3	57.3
일본인	2	.7	.7	58.0
흑인여성	1	.3	.3	58.3
기타여성	3	1.0	1.0	59.3
파악불가	117	40.3	40.3	100.0
Total	290	100.0	100.0	

표 <4-12>에 동료는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것이 48.6%(141명)였다. 그 외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5.5%(16경우) 그 다음으로 많고 나머지는 2.1%(6경우)가 조선인과 대만인, 베트남인 등 현지여성들이 함께 있었다. 소수로는 조선인+중국인+일본인인 경우(2경우), 조선인+일본인+대만인(1경우), 조선인+일본인+기타여성(1경우)이었다. 조선인만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동료로 조선인이 있는 경우가 모두 57.8%(167경우)인데 비해 조선인 없이 일본인, 흑인여성, 기타여성만 있었다는 경우는 2.1%(6경우)에 불과했다. 증언집에 실린 사례들도 대개 조선인 동료를 가지고 있었다.



표 <4-13>에서 조선인 동료의 규모를 보면 10명 미만 13.8%(40경우), 10명에서 20명 미만 13.1%(38경우), 20명에서 30명 미만 9.0%(26경우), 30명에서 40명 미만 10.0%(29경우)이다. 40명 미만이 모두 45.9%로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로 10명에서 40명 사이가 많았다. 일본인 동료의 규모는 10명 미만이 5.2%(15경우) 있었다 하더라도 인원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은 주로 민족별 혹은 인종별로 여성들을 모아서 위안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본군은 위안소 정책을 시행하면서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외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위안소를 폐쇄했다. 이와 같은 인종 차별은 위안소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민족별로 차등을 둔 지역도 있었다.(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의 경우는 중국인 1원, 조선인 1원 50전, 일본인 2원) 대개 조선인은 조선인끼리 구성되었는데 현지 사정에 따라 현지인 여성과 함께 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4-5. 체류기간

<4-14> 체류기간 (괄호 안은 비율, %)

	처음 동원	처음 이동	두번째 이동
1년 미만	19 (9.9)	9 (4.7)	4 (2.1)
1-2년 미만	36 (18.8)	12 (6.3)	2 (1.0)
2-3년 미만	27 (14.1)	7 (3.6)	2 (1.0)
3-4년 미만	24 (12.5)	8 (4.2)	2 (1.0)
4-5년 미만	12 (6.2)	7 (3.6)	2 (1.0)
5-6년 미만	16 (8.3)	2 (1.0)	1 (.5)
6-7년 미만	17 (8.9)	2 (1.0)	2 (1.0)
7-9년 미만	12 (6.2)	1 (.5)	0
9-10년 미만	3 (1.6)	0	0
10년 이상	5 (2.6)	0	0
모르겠다	21 (10.9)	25 (13.0)	10 (5.2)
해당없음	0	119 (62.0)	167 (87.0)
Total	192 (100.0)	192 (100.0)	192 (100.0)

<4-15> 총 체류기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1년 미만	9	4.7	4.7	4.7
1-2년 미만	22	11.5	11.5	16.2
2-3년 미만	27	14.1	14.1	30.3

표<4-15> 다음장으로 이어짐

3-4년 미만	22	11.5	11.5	41.8
4-5년 미만	17	8.8	8.8	50.6
5-6년 미만	18	9.4	9.4	60.0
6-7년 미만	24	12.5	12.5	72.5
7-9년 미만	19	9.9	9.9	82.4
9-11년 미만	7	3.6	3.6	86.0
11년 이상	7	3.6	3.6	89.6
모르겠다	20	10.4	10.4	100.0
Total	192	100.0	100.0	

총 체류기간은 1년 미만 4.7%(9명), 1~3년 미만 25.6%(49명), 3~5년 미만 20.3%(39명), 5~7년 미만 21.9%(42명), 7~9년 미만 9.9%(19명), 9~11년 미만 3.6%(7명), 11년 이상이 3.6%(7명, 최고는 14년)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의 1931년 만주침략부터 1945년 해방까지 14년, 1937년 중일전쟁부터 하면 8년임을 감안하고 체류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가 72.4%(139명)로 파악되는 것을 연결시키면 대부분 피해자들이 1937년 이후 동원된 것을 보여준다.

다른 동남아시아 피해자와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장기간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데 비해서 조선인의 경우는 자신의 나라를 떠난 이국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가 48명중에 26명이었고 가장 긴 경우가 6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婦女救援基金會, 1999)

4-6.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들 종류와 계급

<4-16> 군인의 종류 (괄호 안은 비율, %)

	처음 동원	처음 이동	두 번째 이동
육 군	82 (42.7)	25 (13.0)	9 (4.7)
해 군	3 (1.6)	3 (1.6)	0
육군과 해군	12 (6.3)	5 (2.6)	1 (.5)
육군, 해군, 일본인, 대만인	1 (.5)	0	0
육군, 대만인, 일본인	1 (.5)	0	0
기 타	5 (2.6)	2 (1.0)	3 (1.6)
모르겠다	88 (45.8)	38 (19.8)	12 (6.3)
해당없음	0	119 (62.0)	167 (86.9)
Total	192 (100.0)	192 (100.0)	192 (100.0)

<4-17> 군인의 종류 (해당없음을 제외)

	Frequency	Percent
육 군	116	40.0
해 군	6	2.1

표<4-17> 다음장으로 이어짐

육군과 해군	18	5
육군, 해군, 일본인, 대만인	1	.3
육군, 대만인, 일본인	1	.3
기 타	10	3.4
모르겠다	138	47.6
Total	290	100.0

위안소에 온 군인들이 육군인지 해군인지를 물었고 두 번째 동원된 것까지 각기 사례로 표 <4-16>로 정리하였다. 이것을 해당없음을 빼고 조정한 것이 표 <4-17>이다. 이것에 의하면 육군이 40%(116명)로 가장 높고 육군과 해군이 함께 이용한 경우는 6.2%(18명)였다. 기타로는 아래에 나오는 위안소 내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것에 나오는 군속이 해당될 것이다. 군인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일본민간인과 현지인(두 사람 모두 대만인)이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들 민간인은 일본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민간인도 이용한 경우는 군 이용 위안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인이 주요한 이용자였다고 할 수 있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높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육군성이 위안소 정책을 실시한 점, 중국으로 동원된 경우가 많고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국경을 넘어 이동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육군이었을 것이다.

해군은 1932년 상해에 육군보다 먼저 위안소를 설치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있고 1942년 5월 30일 해군성이 동남아시아 방면 「특요원(해군에서 ‘위안부’를 부르는 명칭)」을 배치할 운영방침을 정했다. 해군의 경우는 설치.허가와 감독은 해군 민정부장관이 하고 실제 모집과 고용계약체결은 민정부 촉탁(군속)이 하는 위안소와 해군 직영 위안소가 있었다.(吉見義明, 2000 재인용)

<4-18> 위안소 이용 군인의 계급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장 교	17	8.9	8.9	8.9
사 병	35	18.2	18.2	27.1
사병과 장교가 함께	90	46.9	46.9	74.0
기 타	4	2.1	2.1	76.0
과약불가	46	24.0	24.0	100.0
Total	192	100.0	100.0	

주로 어느 계급의 군인이 이용했는지를 조사했더니 장교와 사병이 함께 이용한 경우가 46.9%(90명), 사병이 18.2%(35명), 장교가 8.9%(17명)로 드러났다. 조선인 피해자들은 장교보다는 사병용 위안소에 주로 배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군관문서에서 군 위안소 이용규칙의 이용시간에서 계급별로 시간을 나눈 것과 연결되는데 낮에 먼저 사병이 다음에 하사관 급이 이용하고 저녁시간 혹은 밤에 장교가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센다가코, 요시미요 시아티 등의 연구자들과 일본 군인들의 회상록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군 위안소 이용규칙에서 일본군 장교용 위안소는 주로 일본인 여성으로 충원했고 조선인 여성 중에서 선별해서 장교용 위안소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4-21> 도망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해당없음 제외)

(괄호 안은 비율, %)

	군인 감시	주인 감시	동료 감시	지리, 물정을 몰라서	두려워 서	위협, 협박	자포 자기, 체념	정신 이상, /기타
그렇다	25 (16.5)	13 (8.6)	1 (.6)	36 (23.8)	13 (8.6)	17 (11.2)	22 (14.5)	3 (2.0)
아니다	64 (42.4)	76 (50.3)	88 (58.3)	53 (35.1)	76 (50.3)	72 (47.7)	67 (44.4)	86 (56.9)
과약 불가	62 (41.1)	62 (41.1)	62 (41.1)	62 (41.1)	62 (41.1)	62 (41.1)	62 (41.1)	62 (41.1)
Total	151 (100.0)	151 (100.0)	151 (100.0)	151 (100.0)	151 (100.0)	151 (100.0)	151 (100.0)	151 (100.0)

위안소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였나를 보기 위해 도망을 시도했는지를 물었다. 시도한 경우는 22.4%(43명)이고 시도하지 못한 경우는 46.4%(89명)이었다.

표 <4-21>에서 도망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는 지리, 물정을 몰라서 23.8%(36명), 군인 감시 16.5%(25명), 자포자기와 체념 14.5%(22명), 위협과 협박 11.2%(17명), 두려워서 8.6%(13명), 주인감시 8.6%(13명), 정신이상 2.0%(3명), 동료감시 0.5%(1명) 순으로 드러났다. 타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데다가 군인이 감시를 하는 상황, 게다가 전쟁수행 중이라 마음대로 교통수단을 탈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을 시도하지 못한 이들이 두 배정도 많은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시도한 경우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있다가는 죽을 것이라는 절박감에서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22> 도망 시도 결과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도망가다 붙잡혔다	18	9.4	9.4	9.4
스스로 되돌아왔다	2	1.1	1.1	11.5
도망에 성공했다	18	9.4	9.4	20.9
도망 후 신고로 붙잡혔다	2	1.0	1.0	21.9
해당없음	92	46.8	46.8	68.7
과약불가	60	33.3	33.3	100.0
Total	192	100.0	100.0	

<4-23> 도망 시도 결과 (해당없음 제외)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도망가다 붙잡혔다	18	17.5	17.5	17.5
스스로 되돌아왔다	2	1.9	1.9	19.4
도망에 성공했다	18	17.5	17.5	36.9
도망 후 신고로 붙잡혔다	2	1.9	1.9	38.8
과약불가	60	60.2	60.2	100.0
Total	100	100.0	100.0	

이렇게 힘들게 도망을 시도한 결과는 표 <4-23>에 성공한 경우는 17.5%(18명), 실패한 경우는 21.3%(22명)였다. 실패한 22명 중 2명은 도망갔다가 어쩔 도리 없어 스스로 되돌아왔고 18명은 도망가다가 붙잡혀왔다. 2명은 일단 도망에는 성공했으나 신고로 되돌아와야 했다.

#### 4-8. 하루 평균 상대 군인수

<4-24> 하루 평균 상대한 군인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1-5명	17	8.9	8.9	8.9
6-10명	25	13.0	13.0	21.9
11-15명	23	12.0	12.0	33.9
16-20명	17	8.9	8.9	42.7
21-30명	33	17.2	17.2	59.9
30명이상	15	7.8	7.8	67.7
셀 수 없다	31	16.1	16.1	83.9
모르겠다	14	7.3	7.3	91.1
파악불가	17	8.9	8.9	100.0
Total	192	100.0	100.0	

하루 평균 상대한 군인 수는 10명 이하가 21.9%(42명), 11명에서 20명 이하 20.9%(40명), 21명에서 30명 이하 17.2%(33명), 30명 이상이 7.8%(15명)이었다. 셀 수 없다고 답한 경우도 16.1%(31명)로 조사되었다.

평균 상대한 인원이 고르게 나뉘는 것은 위안소가 있었던 나라와 지역의 사정이 다양했음을 보여준다. 상대한 인원이 많을수록 고통이 컸고 성 노예 생활에 시달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상대한 인원이 적은 경우에 그 만큼 고통이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대한 인원수에 관계없이 이들이 위안소에 감금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는 공통된 것이었다.

이 항목이 평균을 조사한 것일 뿐이고 증언집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일과 비교해서 주말에 많은 군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었음을 묘사했다. 그러므로 셀 수 없다는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는 당시 상황을 다시 기억하기 싫은 피해자의 심정도 반영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4-9. 위안소에서 폭력

<4-25> 위안소에서 경험한 폭력의 종류 (괄호 안은 비율, %)

	구 타	고 문	감 금	굶기기	위 협
그렇다	105 (54.7)	15 (7.8)	25 (13.0)	30 (15.6)	68 (35.4)
아니다	32 (16.7)	122 (63.6)	112 (58.3)	107 (55.7)	69 (36.0)
파악불가	55 (28.6)	55 (28.6)	55 (28.6)	55 (28.6)	55 (28.6)
Total	192 (100.0)	192 (100.0)	192 (100.0)	192 (100.0)	192 (100.0)

<4-26> 위안소에서 경험한 폭력의 종류 (파악가능한 것만)

(괄호 안은 비율, %)

	구 타	고 문	감 금	굶기기	위 협
그렇다	105 (76.6)	15 (10.9)	25 (18.2)	30 (21.9)	68 (49.6)
아니다	32 (23.4)	122 (89.1)	112 (81.8)	107 (78.1)	69 (50.4)
Total	137 (100.0)	137 (100.0)	137 (100.0)	137 (100.0)	137 (100.0)

위안소에서 폭력 경험은 구타 54.7%(105명), 위협 35.4%(68명), 굶기기 15.6%(30명), 감금 13.0%(25명), 고문 7.8%(15명) 순으로 조사되어 특히 구타와 위

협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파악 가능한 경우로 조정한 표< 4-26>에 의하면 구타 비율은 76.6% 위협은 49.6%로 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증언집에 의하면 구타와 위협을 가하는 주체는 군인 혹은 위안소 주인이나 관리자로 드러나는데 바로 이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위안소 내에서 일상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권력을 지닌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4-10. 위안소 내 관계

<4-27> 위안소에서 특별한 관계 유무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그렇다	70	36.5	36.5	36.5
아니다	55	28.6	28.6	65.1
파악불가	67	34.9	34.9	99.5
Total	192	100.0	100.0	

<4-28> 위안소 특정관계의 대상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일본인 장교	21	10.9	10.9	10.9
일본인 사병	11	5.7	5.7	16.6
군의원	5	2.6	2.6	19.3
일본인 군속	3	1.6	1.6	20.9
조선인 장교	2	1.0	1.0	21.9
조선인 사병	2	1.0	1.0	22.9
조선인 군속	2	1.0	1.0	24.0
조선인 민간인	6	3.1	3.1	27.1
위안부 동료	14	7.3	7.3	34.4
누군지 기억안남	11	5.7	5.7	40.1
파악불가	115	59.9	59.9	100.0
Total	192	100.0	100.0	

위안소에서 특별히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36.5%(70명)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대상은 일본인 군인(장교, 사병, 군의관, 군속)이 20.9%(40명), 위안부 동료 7.3%(14명), 조선인 민간인 3.1%(6명), 조선인 군인(장교, 사병, 군속)이 3%(6명)로 드러났다. 보통 각자의 방에 감금되어 주요한 생활이 일본인 군인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군인들과 친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인 장교가 10.9%(21명)로 높게 나타나고 2.6%(5명)는 성병 검사 시에 만나는 군의관과 친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피해자였던 동료와 친한 관계에 있다고 한 비율이 7.3%(14명)에 불과한 점과 아예 특별히 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 28.6%(55명)의 경우는 외부와도 단절되고 위안소 내에서도 거의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고립과 소외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4-11. 특정 군인과 동거여부

##### <4-29> 특정군인과 동거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10	5.2	5.2	5.2
없다	117	60.9	60.9	66.1
과악불가	65	33.9	33.9	100.0
Total	192	100.0	100.0	

특정 군인과 동거한 경험은 5.2%(10명)이 있고 60.9%(117명)는 없다고 응답했다. 주로 장교가 대상인 것으로 증언집을 통해 알 수 있다. 위안소 이용규칙에 '위안부'에 대한 공유가 규정된 경우도 있듯이 특정인과만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 소수의 장교들이 규정을 어기고 한 '위안부'와만 관계를 가졌는데 증언집에서 보면 따로 집을 얻어 동거하는 경우 라기 보다는 위안소에서 특정 장교만 상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 4-12. 군인들의 요금 지불

##### <4-30> 군인들의 돈 (군표) 지불 유무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군표를 냈다	58	30.2	30.2	30.2
돈을 냈다.	19	9.9	9.9	40.1
군표와 돈을 냈다	11	5.7	5.7	45.8
내긴 냈다	4	2.1	2.1	47.9
받지 못함	3	1.6	1.6	49.5
모르겠다	17	8.9	8.9	58.4
기타	17	8.9	8.9	67.2
과약 불가	63	32.8	32.8	100.0
Total	192	100.0	100.0	

군인들이 돈 혹은 군표를 지불했다는 응답은 47.9%(92명)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30.2%(58명)은 군표로 지불했다. 군인에게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명)에 불과했다. 이것을 파악 가능한 경우로 환산하면 71.3%로 조정되어 상당수의 군인들이 위안소에 와서 이용요금을 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피해자 중에 군표와 돈 외에 군인 계급별로 다른 색깔의 표를 가져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일부 부대에서 이용한 티켓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안소 이용규칙에도 요금을 지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아 댓가가 지불된 거래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일본의 일부 우익들 주장대로 위안소 제도를 공창제와 같은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공창제가 국가가 여성의 성을 통제할 수 있는 노예라면 위안소의 경우는 전시라는 상황에서 국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군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성 노예를 동원하였고 그 외 위안소 운영도 감독하고 통제할 것으로 피해여성들의 인권유린이 더 극심했기 때문에 군의 책임이 한층 더 무겁게 추궁되어야 한다.

#### 4-13. 피해자들의 대가수령여부

##### <4-31> 위안소 생활 중 댓가 수령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받았다	31	16.1	16.1	16.1
받지 못했다	104	54.2	54.2	70.3
파악불가	57	29.7	29.7	100.0
Total	192	100.0	100.0	

반면에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댓가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4.2%(104명), 받았다 16.1%(31명)으로 조사되었다. 파악가능한 것으로 조정하면 77%가 받지 못했고 23%는 받았다. 대다수가 위안소 생활 중 댓가를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안소 주인이 피해자를 동원하면서 든 차비, 식사비 등의 비용을 빚으로 계산하거나 인신매매로 모집업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준 전차금(前借金)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위안소 생활 중에 식비, 의복비, 화장품 등을 구입해주면서 가격을 높게 매겨 떼어먹은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댓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균표로 받은 경우에는 일본이 망한 후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고 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전시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였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강제저축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 역시 이렇게 저금한 돈을 해방 후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군인에게서 직접 댓가를 받든, 위안소 업자와 관계에서 정산이 되든 자신의 몸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해자들이 강간을 당했다 라는 인식이 아니라 ‘몸을 팔았다’고 인식하게 만든 중요 요소이다. 증언 집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는 성 매매를 ‘위안부’ 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실제 이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방 후 미군을 상대한 여성을 미군위안부라고 신문에서 표현한 점도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성폭력문제와 민족문제로 등장하기 전에 위안소제도가 성 매매의 일련선상에서 파악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4-14. 위안소에서 호칭

##### <4-32> 위안소에서 사용한 이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일본식 이름	121	63.0	63.0	63.0
원래 이름	8	4.2	4.2	67.2
숫자	6	3.1	3.1	70.3
기타	2	1.0	1.0	71.4
파악불가	55	28.6	28.6	100.0
Total	192	100.0	100.0	

위안소에서 사용한 이름은 63%(121명)가 일본식 이름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원래 이름 4.2%(8명), 숫자 3.1%(6명)로 대다수가 본래의 이름 대신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것 역시 일본군인을 위한 시설에 있기 때문에 강요된 것으로 보인다.

4-15. 임신과 출산 경험

<4-33> 위안소에서 임신경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22	11.5	11.5	11.5
없다	98	51.0	51.0	62.5
파악불가	72	37.5	37.5	100.0
Total	192	100.0	100.0	

<4-34> 위안소 임신 횟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셀 수 없이 많다	1	.5	.5	.5
1번	17	8.9	8.9	9.4
2번	4	2.1	2.1	11.5
해당없음	98	51.0	51.0	62.5
파악불가	72	37.5	37.5	100.0
Total	192	100.0	100.0	

<4-35> 임신을 처리한 내용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중절수술	8	4.2	4.2	4.2
자연유산	3	1.6	1.6	5.8
출산	10	5.2	5.2	11.0
귀국조치	1	.5	.5	11.5
해당없음	98	51.0	51.0	62.5
파악불가	72	37.5	37.5	100.0
Total	192	100.0	100.0	

위안소에서 임신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11.5%(22명)이 있다고 하였다. 임신의 횟수는 22명중 1번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2번 임신한 사람이 4명, 셀 수 없이 많다가 1명이었다. 이렇게 임신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는 출산이 10명, 중절수술 8명, 자연유산 3명, 귀국조치 1명으로 조사되었다.

위안소에서 폭력과 끊임없는 강간 가운데서 이루어진 임신은 우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군인들의 사쿠(콘돔)사용이 의무였지만 사용하지 않는 군인도 있었고 장교나 군의관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된 경우는 출산까지 그냥 두거나 중절수술을 해주었는데, 출산할 때까지 위안소에서 계속 군인들을 상대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들 피해자들의 모성은 심각하게 위협당했다. 임신했다고 귀국한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사례로 생각된다.

출산한 아이 중 양자로 준 경우가 5명이었고 낳고 바로 죽거나 키우다 죽은 경우 2명, 위안소에서 키운 경우 1명으로 파악되었다. 전쟁 끝난 후 데리고 귀국한 경우가 3명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종전 후 귀국과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피해자에 관한 기록들과 일치한다. 위안소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귀국한 아이들은 이들의 피해가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 수 있다.

<4-36> 출산경험 횟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1번	8	4.2	4.2	4.2
2번	2	1.0	1.0	5.2
해당없음	110	57.3	57.3	62.5
파악불가	72	37.5	37.5	100.0
Total	192	100.0	100.0	

<4-37> 출산한 아이의 처리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낳고 바로 죽였다	1	.5	.5	.5
키우다 죽였다	1	.5	.5	1.0
위안소에서 키웠다	1	.5	.5	1.5
양자로 줬다	5	2.6	2.6	4.1
테리고 귀국했다	3	1.6	1.6	5.7
모르겠다	2	1.0	1.0	6.7
해당없음	110	56.4	56.4	63.1
파악불가	72	36.9	36.9	100.0
Total	195	100.0	100.0	

(※ 출산을 한 사람은 모두 10명인데 그 중 두 번 출산한 경우가 2명 있고 임신으로 귀국 처리한 경우도 출산한 경우여서 태어난 아이의 수는 13명이 된다)

<4-38> 출산한 아이의 처리(아는 경우만)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낳고 바로 죽었다	1	7.7	7.7
키우다 죽었다	1	7.7	7.7
위안소에서 키웠다	1	7.7	7.7
양자로 졌다	5	38.4	38.4
테리고 귀국했다	3	23.1	23.1
모르겠다	2	15.4	15.4
Total	13	100.0	100.0

4-16. 위안소 생활 중 경험

<4-39> 위안소에서 경험종류 (괄호 안은 비율 %)

	군사 훈련	간 호	노 역	세 탁	환 송	물건 구입	구 경	목욕탕
그렇다	19 (9.9)	25 (13.0)	9 (4.7)	61 (31.8)	33 (17.2)	23 (12.0)	27 (14.1)	17 (8.9)
아니오	97 (50.5)	91 (47.4)	107 (55.7)	55 (28.6)	83 (43.2)	93 (48.4)	89 (46.4)	99 (51.6)
파악 불가	76 (39.6)							
Total	192 (100.0)							

<4-40> 위안소에서 기타 경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청소(내무반, 병원)	5	2.6	2.6	2.6
식량확보(사탕수수, 감자캐는 일)	2	1.0	1.0	3.6
현지반란	1	.5	.5	4.2
거리행상	1	.5	.5	4.7
방공호생활	4	2.1	2.1	6.8
황국신민서사외기	1	.5	.5	7.3

표<4-40> 다음장으로 이어짐

장례, 묘지돌보기	3	1.6	1.6	8.9
식사담당	4	2.1	2.1	10.9
아 편	1	.5	.5	11.5
적군살해현장입회	1	.5	.5	12.0
해당없음	163	84.9	84.9	96.9
기 타	4	2.1	2.1	99.0
창고에 갇혀있음	1	.5	.5	99.5
아무일도 안했다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위안소에서 경험한 것을 다양하게 조사하였더니 세탁 31.8%(61명), 군인 환송 및 연회참석 17.2%(33명), 구경 14.1%(27명), 간호 13%(25명), 군사훈련 9.9%(19명), 목욕탕 8.9%(17명), 노역(방공호파기) 4.7%(9명)으로 나타났다. 군대와 연결되다 보니 필요에 따라 세탁을 시키기도 하고 군인들 환송, 간호, 군사훈련 등에 동원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은 피해자들은 위안소에서 군인들 상대하기에 바빠서 식사와 청소를 담당하는 고용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간호 경험과 관련해서는 전쟁말기에 위안소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일본군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이동시켜 간호보조를 하게 만들기도 한 것이 증언집에 실려있다.

기타 경험으로 청소(5명), 방공호생활(4명), 식사담당(4명), 장례 참여 및 묘지 돌보기(3명)등으로 나타났다. 동원된 지역에 따라 전쟁 말기에 공습을 피해 방공호 생활을 하거나 식량이 공급이 안 되어 사탕수수를 캐기도 했다. 1명은 적군이 살해되는 현장에 입회했다.

4-17. 위안소 생활 중 질병

<4-41> 앓던 질병 종류 (괄호 안은 비율 %)

	성 병	구타,고문, 외상	정 신 질 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성기, 자궁이상	전염병
걸렸다	46 (24.0)	46 (24.0)	10 (5.2)	6 (3.1)	4 (2.1)	68 (35.4)	17 (8.9)
안 걸렸다	79 (41.1)	79 (41.1)	115 (59.9)	119 (62.0)	121 (41.2)	57 (29.7)	108 (56.3)
과약 불가	67 (34.9)						
Total	192 (100.0)						

위안소에서 앓던 질병은 성기, 자궁이상 35.4%(68명), 성병 24%(46명), 구타, 고문, 외상이 24%(46명)로 나타났고 소수로 정신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이 보고되었다. 성기, 자궁이상과 성병 비율을 합하면 59.4%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된다.

10대의 미성년자들에게 갑작스럽게 군인들에게 지속적인 강간을 당하는 상태에서 성기가 온전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반항하다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 외에 감금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강간과 폭력에 노출된 상황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4-42> 성병 종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매 독	18	9.4	9.4	9.4
임 질	5	2.6	2.6	12.0
요코네	3	1.6	1.6	13.6
밑이 붓는 병	1	.5	.5	14.1
서혜부임파선육아종	1	.5	.5	14.6
기억못함	18	9.4	9.4	24.0
파악불가	67	34.9	34.9	58.9
해당없음	79	41.1	41.1	100.0
Total	192	100.0	100.0	

<4-43> 성병 종류 (해당없음 제외)

	Frequency	Percent
매 독	18	15.9
임 질	5	4.4
요코네	3	2.7
밑이 붓는 병	1	.9
서혜부임파선육아종	1	.9
기억 못함	18	15.9
파악 불가	67	59.3
Total	113	100.0

성병에 걸린 경우를 해당없음을 제외한 표<4-43>을 보면 성병의 종류는 매독

15.9%(18명), 임질 4.4%(5명), 요코네 2.7%(3명), 서혜부임파선육아종 0.9%(1명) 등으로 매독에 걸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독, 임질, 연성하감, 서혜부임파선육아종은 세균에 의한 성병의 대표적인 종류들이다. 매독은 치료되지 못하면 자식에게까지 전염되는 병이다. 요코네는 일본어로 가래툰이라는 말인데 가래툰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이런 증상은 단순히 부스럼인 경우도 있지만 성병감염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가래툰이 나타나는 성병으로는 매독, 연성하감, 임질이 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두산백과사전) 밑이 붓는 증상도 성병의 증세 중의 하나이다.

#### <4-44> 전염병 병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말라리아	9	4.7	4.7	4.7
장티푸스	1	.5	.5	5.2
열 병	1	.5	.5	5.7
기억나지않음	6	3.1	3.1	8.8
파악불가	67	34.9	34.9	43.7
해당없음	108	56.3	56.3	100.0
Total	192	100.0	100.0	

전염병에 걸린 경우는 모두 17명인데 그 중 병 이름을 아는 것은 말라리아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티푸스 1명, 열병 1명이었다. 이들 전염병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의 더운 기후인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이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죽기도 했던 병이다.

기타 질병으로는 심장질환 3명, 긴장하면 떨림 2명, 고막 터짐 1명, 기아 1명, 머리 빠지는 병 1명 등이 보고되었다. 폭격으로 입은 부상도 2명 있었다.

<4-45> 기타 질병 병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심장 질환	3	1.6	1.6	1.6
신장 질환	1	.5	.5	2.1
긴장하면 별별 떨림	2	1.0	1.0	3.1
고막 터짐	1	.5	.5	3.6
동 상	1	.5	.5	4.2
방광염	1	.5	.5	4.7
폐 병	1	.5	.5	5.2
폭격으로 하퇴부관통상	1	.5	.5	5.7
기아, 영양실조	1	.5	.5	6.2
머리빠지는 병	1	.5	.5	6.8
과약불가	172	89.6	89.6	96.4
치 질	1	.5	.5	96.9
기타	5	2.6	2.6	99.5
공습으로 다리다침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4-46> 질병 치료 방법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방치되어 특별히 받은 치료가 없다	23	12.0	12.0	12.0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49	25.5	25.5	37.5

표<4-46> 다음장으로 이어짐

의사가 와서 치료해주었다	23	12.0	12.0	49.5
주인이나 동료들이 보살펴 주었다	9	4.7	4.7	54.2
군인들이 간단히 처치	1	.5	.5	54.7
기타	7	3.6	3.6	58.3
파악불가	80	41.7	41.7	100.0
Total	192	100.0	100.0	

<4-47> 성병 치료 방법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방치되어 특별한 치료받은 적이 없다	11	5.7	5.7	5.7
병원에 가서 치료	54	28.1	28.1	33.8
의사가 와서 치료	23	12.0	12.0	45.8
주인이나 동료가 보살펴줌	3	1.6	1.6	47.4
기 타	5	2.6	2.6	50.0
파악불가	96	50.0	50.0	100.0
Total	192	100.0	100.0	

질병에 걸린 경우와 성병에 걸린 경우 치료방법을 따로 물었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병원에 가거나 의사가 와서 치료한 경우가 37.5%(72명)이었고 성병에 걸린 경우는 40.1%(77명)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방치되어 특별히 치료받은 적이 없다 에 질병은 12.0%(23명)이 응답하였는데 비해 성병의 경우는 5.7%(11명)으로 파악된 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성병검진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성병에 걸린 경

우가 치료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다.

#### 4-18. 성병검진 유무

##### <4-48> 정기 검진 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받았다	108	56.3	56.3	56.3
아니다	16	8.3	8.3	64.6
파악불가	68	35.4	35.4	100.0
Total	192	100.0	100.0	

##### <4-49> 성병검사 주기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일주일에 한번	80	41.7	41.7	41.7
열흘에 한번	4	2.1	2.1	43.8
한달에 한번	11	5.7	5.7	49.5
한달에 두번	6	3.1	3.1	52.6
아프다고해야 치료	2	1.0	1.0	53.6
기 타	5	2.6	2.6	56.3
해당없음	16	8.3	8.3	64.6
파악불가	68	35.4	35.4	100.0
Total	192	100.0	100.0	

성병검사는 56.3%(108명)가 받았다고 응답했고 8.3%(16명)만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파악 가능한 것으로 조정하면 87.1%와 12.9%로 되어 거의 대다수가 성병검

사를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검사의 주기는 일주일에 한번이 41.7%(80명), 한 달에 한번 5.7%(11명) 한 달에 두 번 3.1%(6명)로 파악되어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성병 검사에도 불구하고 성병에 걸렸는데 군인들에 대한 검사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검사만으로 성병을 제대로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의사 혹은 위생병이 와서 검사를 하든 일정한 날을 정해 한번에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증언집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 많은 인원을 빨리 검사해야 하므로 제대로 검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4-50> 성병방지방법 유무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116	60.4	60.4	60.4
없다	7	3.6	3.6	64.1
파악불가	69	35.9	35.9	100.0
Total	192	100.0	100.0	

<4-51> 성병방지로 사용한 방법 (괄호 안은 비율 %)

	샷쿠(콘돔) 사용	뒷물 사용	약 (주사 포함)
사용했다	98 (51.0)	60 (31.3)	71 (37.0)
사용 안했다	25 (13.0)	63 (32.8)	52 (27.1)
파악불가	69 (35.9)	69 (35.9)	69 (35.9)
Total	192 (100.0)	192 (100.0)	192 (100.0)

<4-52> 성병방지로 사용한 방법 (중복여부)

	Frequency	Percent
샷쿠만	23	12.0
샷쿠와 뒷물	21	10.9
샷쿠와 약(주사)	24	12.5
샷쿠, 뒷물, 약(주사)	30	15.6
뒷물, 약(주사)	6	3.1
약(주사)만	11	5.7
뒷물만	3	1.6
샷쿠와 뒷물하지 않음	5	2.6
파악불가	69	35.9
Total	192	100.0

<4-53> 성병방지를 위한 약의 종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606호(살바르산 주사)	47	24.4	24.4	24.4
빨간 약	1	.5	.5	24.9
주사투입	1	.5	.5	25.5
과망간산칼리희석액 (소독약)	3	1.6	1.6	27.1
크레졸 넣은물	1	.5	.5	27.6
요도추라모 (요오드포름으로 추정)	1	.5	.5	28.1

표<4-53> 다음장으로 이어짐

마이신종류	1	.5	.5	28.6
불임 약	2	1.0	1.0	29.6
기니내	1	.5	.5	30.2
이름모름	13	6.8	6.8	37.0
파악불가	121	63.0	63.0	100.0
Total	192	100.0	100.0	

성병 방지 방법은 60.4%(116명)이 있다고, 3.6%(7명)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파악가능한 경우로만 계산하면 94.3%로 조정된다. 이것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목적에 성병방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군의 위안소에 대한 관리에서 위생 부분은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병 방지 방법으로는 샷쿠(콘돔) 사용 51%(98명), 약(주사포함) 37%(71명), 뒷물 31.3%(60명)으로 나타난다. 역시 샷쿠 이용이 성병방지 방법으로 가장 많았다. 육군의 경우는 해외파견군에 샷쿠를 보냈다. 그 숫자는 알려진 것이 1942년 중에 3210만개가 된다.(吉見義明, 2000에서 재인용)

세 가지 방법은 한가지씩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이용되었는데 표 <4-52>에 보면 두 가지 이상 중복해서 쓴 비율이 42.2%(81명)로 조사되었다.

성병방지를 위한 약(주사포함)의 종류는 606호가 24.4%(47명)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과망간산칼리회석액, 크레졸 넣은 물 등 소독약의 일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살바르산은 세계 최초의 화학요법제로 P. 에를리히가 606번째 합성하였다하여 606호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주로 매독치료제로 쓰이던 것인데, 부작용이 커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성병방지를 위해서 이 주사를 맞았다고 알고 있다.

<4-54> 606호 주사 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73	38.0	38.0	38.0
없다	40	20.8	20.8	58.9
파악불가	79	41.1	41.1	100.0
Total	192	100.0	100.0	

실제로 606호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38%(73명), 없다는 사람이 20.8%(40명)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성병에 걸렸다는 24%(46명), 그 중에서도 606호가 특효인 매독에 걸린 9.4%(18명)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본인은 모르지만 성병에 걸려서 주사를 맞은 경우도 가능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 성병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워낙 많은 군인들을 상대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19. 위안소에서 목격한 경험

<4-55> 위안소에서 목격한 경험

	자살	살해	구타, 고문	실 종	임 신	출 산	아이 양육	동 거	아 편
보았다	29 (15.1)	27 (14.1)	67 (34.9)	15 (7.8)	55 (28.7)	24 (12.5)	6 (3.1)	9 (4.7)	18 (9.4)
보지 못했다	90 (46.9)	92 (47.9)	52 (27.1)	104 (54.2)	64 (33.3)	95 (49.5)	113 (58.9)	110 (57.3)	101 (52.6)
과약 불가	73 (38.0)								
Total	192 (100.0)								

<4-56> 위안소에서 목격한 기타 경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병사	6	3.1	3.1	3.1
수술	2	1.0	1.0	4.2
낙태 수술후 사망	1	.5	.5	4.7
비행기 공습으로 위안부 죽음	1	.5	.5	5.2
정신이상	2	1.0	1.0	6.3
아편피던 위안부 한국으로 추방	1	.5	.5	6.8

표<4-56> 다음장으로 이어짐

임신한 여성 구타후 유기	1	.5	.5	7.3
기 타	8	4.2	4.2	11.5
파악불가	170	88.5	88.5	100.0
Total	192	100.0	100.0	

위안소에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목격한 경험으로는 구타와 고문 34.9%(67명), 임신 28.7%(55명), 자살 15.1%(29명), 살해 14.1%(27명), 출산 12.5(24명), 아편9.4(18명), 실종 7.8%(15명), 동거 4.7%(9명), 아이양육 3.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타와 고문의 경우는 앞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비율이 62.5%(120명)에 달해 이번 목격한 경우와 합해서 생각해보면 위안소 내에서의 폭력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하거나 아편에 빠지기도 했고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되기도 하였다. 임신도 본인의 경험이 11.5%(22명)로 조사되었고 위에서 본 다른 사람의 경우를 합하면 40.2%(77명)로 높게 나타난다.

기타 경험으로는 병사(6명), 수술(2명), 정신이상(2명), 낙태수술 후 사망(1명), 비행기 공습으로 죽음(1명), 임신한 여성 구타 후 유기(1명), 아편 피던 ‘위안부’ 한국으로 추방(1명)이 파악되었다.

이상의 피해자들이 위안소 내에서 경험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전쟁이 끝난 뒤 무사히 귀국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신고하기까지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정말 운이 좋은 생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 4-20. 소결

처음 동원된 지역은 중국(당시 만주 포함)이 49.5%(95명)로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이 20.7%(40명), 일본 12.5%(24명), 대만 8.9%(17명), 캐롤라인 제도 등 태평양지역 6.8%(13명), 한국 1.6%(3명)로 전체적으로 광범하게 나타났다.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은 일본군이 자기 나라를 침략한 후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조선인 피해자들은 일본군의 전쟁 시작과 확대에 따라 국외로 동원된 것이다. 같은 나라에서도 한 지역에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있었는데 이처럼 널리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지역적 분포가 일본군이 침략전쟁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처음 동원된 지역에서 이동하지 않은 경우가 62%(119명)로 나타났다. 나머지 38%(73명)는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국경을 넘어 이동하였다. 전체에서 두 번째까지 이동한 경우는 13%(25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이동의 이유는 군 직영 위안소의 경우 일본군의 침략전쟁 확대에 따라 부대를 따라 이동했거나 또는 동원된 지역에 위안소가 너무 많은 경우 새로운 수요를 찾아 군과 연결되어 업자가 움직인 것이다. 일본군은 각지의 사정과 일본군 부대규모를 감안하여 위안소 설립계획을 세웠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으로 도향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일본군은 전쟁을 해나가면서 성병예방과 현지 여성에 대한 강간 방지책 등을 목적으로 한 위안소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군 위안소 제도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현지 군사령부 후방참모, 병참의 위안계(慰安係), 사단.연대의 부관(副官), 헌병대 등에서 담당했다.

총 체류기간은 1년 미만 4.7%(9명), 1~3년 미만 25.6%(49명), 3~5년 미만 20.3%(39명), 5~7년 미만 21.9%(42명), 7~9년 미만 9.9%(19명), 9~11년 미만 3.6%(7명), 11년 이상이 3.6%(7명, 최고는 14년)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동남아시아 피해자와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장기간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데 비해서 조선인의 경우는 자신의

나라를 떠난 이국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위안소 시설은 군에서 새로 지은 건물(천막, 막사 등)에 32.4%(94경우), 민가 29.9%(86경우)로 나타났다. 주로 군인들이 새로 짓거나 현지인들이 살던 민가를 위안소 건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안소 건물은 군이 제공했고 위안소 규칙, 이용요금, 이용시간, 각 부대 이용일 지정, 위생관리 내용도 군이 결정했다.

위안소는 민간인이 주인이 경우가 45.5%(132경우), 부대(군인, 군속)가 주인인 경우는 15.9%(46경우)로 조사되었다. 군대가 직접 운영한 군 직영 위안소보다 업자를 이용한 군 전용 위안소가 3배정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군은 업자를 선정하여 위안소를 개설하도록 허가했고 누가 군 위안소를 이용했는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은 육군이 40%(116경우)로 가장 높고 육군과 해군이 함께 이용한 경우는 6.2%(18경우)였다. 주로 어느 계급의 군인이 이용했는지를 조사했더니 장교와 사병이 함께 이용한 경우가 46.9%(90명), 사병이 18.2%(35명), 장교가 8.9%(17명)로 드러났다. 조선인 피해자들은 장교보다는 사병용 위안소에 주로 배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군관문서에서 군 위안소 이용규칙의 이용시간에서 계급별로 시간을 나눈 것과 연결되는데 낮에 먼저 사병이 다음에 하사관급이 이용하고 저녁시간 혹은 밤에 장교가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군 위안소 이용규칙)

위안소에서 동료는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것이 48.6%(141 경우)였다. 그 외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5.5%(16 경우) 그 다음으로 많고 나머지는 2.1%(6 경우)가 조선인과 대만인, 베트남인 등 현지여성들이 함께 있었다. 일본군이 대개 민족별 혹은 인종별로 여성들을 조직한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조선인들끼리 있었을 것이다. 조선인 동료의 규모를 보면 10명 미만 13.8%(40 경우), 10명에서 20명 미만 13.1%(38 경우), 20명에서 30명 미만 9.0%(26 경우), 30명에서 40명 미만 10.0%(29 경우)이다. 40명 미만이 모두 45.9%로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로 10명에서 40명 사이가 많았다.

위안소에서 도망을 시도한 경우는 22.4%(43명)이고 시도하지 못한 경우는

46.4%(89명)이었다. 도망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는 지리, 물정을 몰라서 23.8%(36명), 군인 감시 16.5%(25명), 자포자기와 체념 14.5%(22명), 위협과 협박 11.2%(17명), 두려워서 8.6%(13명), 주인감시 8.6%(13명) 등으로 드러났다. 타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데다가 군인이 감시를 하는 상황이 작용해서 도망을 시도하지 못하게 했다. 도망을 시도한 경우에 성공한 경우는 17.5%(18명), 실패한 경우는 21.3%(22명)였다.

위안소에서 특별히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36.5%(70명)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대상은 일본인 군인(장교, 사병, 군의관, 군속)이 20.9%(40명), 위안부 동료 7.3%(14명), 조선인 민간인 3.1%(6명), 조선인 군인(장교, 사병, 군속)이 3%(6명)로 드러났다. 보통 각자의 방에 감금되어 주요한 생활이 일본인 군인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군인들과 친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군인과 동거한 경험은 5.2%(10명)이 있고 60.9%(117명)는 없다고 응답했다.

위안소에서 폭력 경험은 구타 54.7%(105명), 위협 35.4%(68명), 굶기기 15.6%(30명), 감금 13.0%(25명), 고문 7.8%(15명) 순으로 조사되어 특히 구타와 위협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군인들이 돈 혹은 군표를 지불했다는 응답은 47.9%(92명)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30.2%(58명)은 군표로 지불했다. 군인에게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댓가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4.2%(104명), 받았다는 16.1%(31명)으로 조사되었다. 파악가능한 것으로 조정하면 77%가 받지 못했고 23%는 받았다. 대다수가 위안소 생활 중 댓가를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위안소에서 사용한 이름은 63%(121명)가 일본식 이름이라고 응답했다.

위안소에서 앓던 질병은 성기, 자궁이상 35.4%(68명), 성병 24%(46명), 구타, 고문, 외상이 24%(46명)로 나타났고 소수로 정신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이 보고되었다. 성기, 자궁이상과 성병 비율을 합하면 59.4%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된다. 대부분 10대의 미성년자들에게 갑작스럽게 군인들에게 계속적인 강간을

당하는 상태에서 성기가 온전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못 하겠다고 반항하다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체적인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 역시 상당했을 것이다.

이들이 걸린 성병의 종류는 매독 15.9%(18명), 임질 4.4%(5명), 요코네 2.7%(3명), 서혜부임파선육아종 0.9%(1명) 등으로 매독에 걸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염병에 걸린 경우는 모두 17명인데 그 중 병 이름을 아는 것은 말라리아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티푸스 1명, 열병 1명이었다.

성병검사는 56.3%(108명)가 받았다고 응답했고 8.3%(16명)만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파악가능한 것으로 조정하면 87.1%와 12.9%로 되어 거의 대다수가 성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검사의 주기는 일주일에 한번이 41.7%(80명), 한 달에 한번 5.7%(11명) 한 달에 두 번 3.1%(6명)로 파악되어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성병 방지 방법은 60.4%(116명)이 있다고, 3.6%(7명)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파악가능한 경우로만 계산하면 94.3%로 조정된다. 이것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목적에 성병방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군의 위안소에 대한 관리에서 위생 부분은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병 방지 방법으로는 샷쿠(콘돔) 사용 51%(98명), 약(주사포함) 37%(71명), 뒷물 31.3%(60명)으로 나타난다. 역시 샷쿠 이용이 성병방지 방법으로 가장 많았다. 세 가지 성병방지방법은 한가지씩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이용되었는데 두 가지 이상 중복해서 쓴 비율이 42.2%(81명)로 조사되었다. 성병방지를 위한 약(주사포함)의 종류는 606호가 24.4%(47명)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과망간산칼리희석액, 크레졸 넣은 물 등 소독약의 일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606호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38%(73명), 없다는 사람이 20.8%(40명)로 조사되었다.

위안소에서 임신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11.5%(22명)이 있다고 하였다. 임신의 횟수는 22명중 1번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2번 임신한 사람이 4명, 셀 수 없이 많다가 1명이었다. 이렇게 임신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는 출산이

10명, 중절수술 8명, 자연유산 3명, 귀국조치 1명으로 조사되었다. 위안소에서 폭력과 끊임없는 강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임신은 우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군인들의 샷쿠(콘돔)사용이 의무였지만 사용하지 않는 군인도 있었고 장교나 군의관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된 경우는 출산까지 그냥 두거나 중절수술을 해주었는데, 출산할 때까지 위안소에서 계속 군인들을 상대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피해자들의 모성은 심각하게 위협 당했다.

위안소에서 경험한 것을 다양하게 조사하였더니 세탁 31.8%(61명), 군인 환송 및 연회참석 17.2%(33명), 구경 14.1%(27명), 간호 13%(25명), 군사훈련 9.9%(19명), 목욕탕 8.9%(17명), 노역(방공호파기) 4.7%(9명)으로 나타났다. 군대와 연결되다 보니 필요에 따라 세탁을 시키기도 하고 군인들 환송, 간호, 군사훈련 등에 동원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안소에서 본인이 목격한 경험으로는 구타와 고문 34.9%(67명), 임신 28.7%(55명), 자살 15.1%(29명), 살해 14.1%(27명), 출산 12.5(24명), 아편9.4(18명), 실종 7.8%(15명), 동거 4.7%(9명), 아이양육 3.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타와 고문의 경우는 앞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비율이 62.5%(120명)에 달해 이번 목격한 경우와 합해서 생각해보면 위안소 내에서의 폭력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피해자들이 위안소 내에서 경험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성 노예로 동원되어 폭력과 강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위안소 기간을 간신히 견디고 전쟁이 끝난 뒤 무사히 귀국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신고하기까지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정말 생명력이 있는 생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 5장. 종전.귀환 상황

## 5. 종전.귀환 상황

### 5-1. 종전 상황

#### <5-1> 종전 언제 알았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종전 전에 미리 알았다	5	2.6	2.6	2.6
종전 당시 알았다	114	59.4	59.4	62.0
종전이 된 후에 알았다	23	12.0	12.0	74.0
귀국후에 알았다	11	5.7	5.7	79.7
모르겠다	9	4.7	4.7	84.4
기 타	3	1.6	1.6	85.9
파악불가	17	8.9	8.9	94.8
종전 전에 귀국했다	10	5.2	5.2	100.0
Total	192	100.0	100.0	

약 60%는 종전 당시에 전쟁이 끝난 것을 알았지만, 12%는 종전이 되고도 한참 후에나 전쟁이 끝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군인과 동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위안소 안에서 가깝게 지내던 군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사실을 미리 알았던 비율이 높다. 반면, 가깝게 지내던 군인이 없었던 사람 중에는 종전이 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안소 안에서 특정 군인과 관계를 유지해간다는 것은 위안부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적인 의미가 강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 <5-2> 종전 후 위안부 이동방법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방치되어 빨빨이 흩어졌다	55	28.6	28.6	28.6
위안부끼리 이동했다	24	12.5	12.5	41.1
군인들이 보호, 안내로 이동	29	15.1	15.1	56.2
위안소 주인이 인솔	6	3.1	3.1	59.3
위안소에서 일하던 중국인집으로	2	1.0	1.0	60.3
연합군의 인도	4	2.1	2.1	62.4
기 타	12	6.3	6.3	68.7
모르겠다	19	9.9	9.9	78.6
과악불가	41	21.4	21.4	100.0
Total	192	100.0	100.0	

28.6%는 전쟁이 끝난 후 어떤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빨빨이 흩어져서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안부들끼리 알아서 이동한 경우도 12.5%인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에 군인들의 보호와 안내로 이동을 했던 경우는 15.1%이고 위안소 주인이 인솔했던 경우는 3.1%이다.

종전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경우에는 군인들의 보호나 인솔로 이동했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종전이 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다는 경우에는 방치된 상태에서 빨빨이 흩어졌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사실을 위안부들에게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종전 후 위안부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경험하게 될 '사실'에 대한 은폐는 폭력적인 강제를 유도하는 장치가 되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 <5-3> 종전 당시의 경험 (과악불가 제외)

	피난생활	현지인 위협	기아	집단학살	연합군 공습	수용소 생활	외국군 강간
Frequency	35	19	31	13	36	43	7
Percent	18.2	9.9	16.1	6.8	18.8	22.4	3.6

전쟁이 끝날 당시 경험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피난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18.2%(35명)이고, 전쟁이 끝난 후 현지인의 위협을 받았던 경우가 9.9%(19명), 기아를 경험했던 경우는 16.1%(31명)로 나타난다.

집단학살을 목격한 경우는 6.8%(13명), 연합군의 공습을 경험한 것이 18.8%(36명)이고 22.4%(43명)는 전쟁이 끝난 후 수용소 생활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3.6%(7명)는 외국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 외에도 동료의 죽음, 윤락 생활, 헤방하지 못하고 현지생활, 병원생활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5-2. 귀국 상황

### <5-4> 이용한 교통수단

	기차	배	자동차	비행기	주도도보	화차	기억안남	기타	파악불가	Total
Frequency	33	114	1	6	9	1	4	4	20	192
Percent	17.2	50.6	0.5	3.1	4.7	0.5	2.1	2.1	10.4	100

귀국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으로는 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차를 이용했던 경우는 17.2%(33명)이고, 걸어서 이동했던 경우도 4.7%(9명)가 되었다.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경우가 비록 수가 적기는 하지만 3.1%(6명)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귀국했다고 답하였다. 비행기를 이용했다거나 걸어서 귀국했다는 사람은 대개가 중국과 만주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5-5> 귀국은 했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파악불가	7	3.6	3.6	3.6
귀국했다	181	94.3	94.3	97.9
귀국하지않았다	4	2.1	2.1	100.0
Total	192	100.0	100.0	

<5-6> 몇 년도에 귀국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과약불가	21	10.9	10.9	10.9
1944년	5	2.6	2.6	13.5
1939년	1	.5	.5	14.1
1940년	2	1.0	1.0	15.1
1941년	4	2.1	2.1	17.2
1942년	3	1.6	1.6	18.8
1943년	3	1.6	1.6	20.3
1945년	83	43.2	43.2	63.5
1946년	49	25.5	25.5	89.1
1947년	7	3.6	3.6	92.7
1948년	3	1.6	1.6	94.3
1949년	1	.5	.5	94.8
1950년	1	.5	.5	95.3
1954년	1	.5	.5	95.8
1979년	1	.5	.5	96.4
1996년	2	1.0	1.0	97.4
1997년	1	.5	.5	97.9
1994년	1	.5	.5	98.4
1978년	1	.5	.5	99.0
2000년	2	1.0	1.0	100.0
Total	192	100.0	100.0	

조사대상자가 피해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전 수가 귀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945년 해방되기까지 귀국한 경우는 63.5%(122명)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1945년 해방되던 해에 귀국한 사람이 43.3%(83

명)로 가장 많다. 그 다음 해인 1946년 귀국자는 25.5%(49)로 나타났다. 전체로 볼 때 68.7%(132명)가 해방에 즈음하여 귀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전이 된 당시에 중전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1945년에 귀국한 사람이 많고, 중전이 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 알았던 경우에는 1946년에 귀국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귀국한 계절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38.5%이고, 기억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을에 귀국을 했다는 경우가 21.4%(41명)로 가장 많고 나머지 겨울(15.5% 29명).봄(12.5% 24명).여름(12.5% 24명)으로 나타났다.

1945년에 귀국한 경우에는 가을과 겨울이 많고, 1946년에 귀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봄이 상대적으로 많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 '위안부' 피해자의 대부분은 해방이 되고 1년 이내에 귀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5-7> 귀국한 계절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파악불가	74	38.5	38.5	38.5
봄	24	12.5	12.5	51.0
여름	24	12.5	12.5	63.5
가을	41	21.4	21.4	84.9
겨울	29	15.1	15.1	100.0
Total	192	100.0	100.0	

귀국한 장소는 경상남도가 48.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8.9%(17명)는 귀국한 장소가 서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 장소가 기억나지 않거나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20.8%(40명)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상남도가 귀국장소로 가장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귀국 장소는 귀국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과 관련이 있는데, 귀국 할 때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경우는 귀국 장소가 대개 서울이었고, 배로 귀국했다는 경우는 경상남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 장소는 출생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국 장소로 경상남도가 많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생존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경상도 출신이고 이중 경상남도 출신이 경상북도에 비해 더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 이외에도 전라도 출신인 경우에는 귀국 장소가 전라도인 경우가 상대적 많았다.

<5-8> 귀국한 도시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과악불가	62	32.3	32.3	32.3
전라북도	5	2.6	2.6	34.9
전라남도	7	3.6	3.6	38.5
전라도	1	.5	.5	39.1
경상남도	93	48.4	48.4	87.5
경상북도	6	3.1	3.1	90.6
강원도	3	1.6	1.6	92.2
함경남도	2	1.0	1.0	93.2
경기도	5	2.6	2.6	95.8
함경북도	1	.5	.5	96.4
평안북도	1	.5	.5	96.9
평안남도	2	1.0	1.0	97.9
충청남도	2	1.0	1.0	99.0
충청북도	1	.5	.5	99.5
황해도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5-9> 지 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파악불가	38	19.8	19.8	19.8
서울	17	8.9	8.9	28.6
부산	84	43.8	43.8	72.4
인천	9	4.7	4.7	77.1
전주시	1	.5	.5	77.6
익산	1	.5	.5	78.1
정읍	1	.5	.5	78.6
군산	2	1.0	1.0	79.7
남원	2	1.0	1.0	80.7
영암	1	.5	.5	81.3
보성	1	.5	.5	81.8
여수	1	.5	.5	82.3
합천	1	.5	.5	82.8
진양	1	.5	.5	83.3
안동	2	1.0	1.0	84.4
대구	2	1.0	1.0	85.4
포항	1	.5	.5	85.9
청도	1	.5	.5	86.5
진주	2	1.0	1.0	87.5
삼량진	1	.5	.5	88.0
홍천	1	.5	.5	88.5
춘천	1	.5	.5	89.1
사리원	1	.5	.5	89.6
원산	1	.5	.5	90.1

표<5-9> 다음장으로 이어짐

평 양	4	2.1	2.1	92.2
삼 수	1	.5	.5	92.7
개 성	2	1.0	1.0	93.7
창 념	1	.5	.5	94.3
산 청	1	.5	.5	94.8
대동강	1	.5	.5	95.3
광 주	1	.5	.5	95.8
철 원	1	.5	.5	96.4
신의주	1	.5	.5	96.9
만 주	1	.5	.5	97.4
대 덕	1	.5	.5	97.9
두만강	1	.5	.5	98.4
당 진	1	.5	.5	99.0
청 진	1	.5	.5	99.5
청 주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귀국 장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부산이 43.8%(84명)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8.9%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4.7%(9명)이고 나머지 지역이 다양하게 1-2명 선으로 분포되어 있다.

### 5-3. 소결

중전 당시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약 60%가 되기는 하였지만, 12%는 중전이 되고도 한참 후에나 전쟁이 끝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자 3-4사람 중에서 한 명(28.6%)은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 이동하였고, 위안소에 함께 있었던 군 '위안부'들끼리 알아서 이동했던 경우도 12.5%인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에 군인들의 보호와 안내로 이동을 했던 경우는 15.1%이고 위안소 주인이 인솔했던 경우는 3.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남아 귀국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은 중전 당시 집단 학살의 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한 위안부의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위안소에 있었던 위안부들의 주된 처리방식 중의 하나가 유기(遺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전 사실의 고지여부는 위안부 처리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특히, 중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군 '위안부'들을 처리했던 방식이 다분히 유기, 방치였던 것을 본 조사결과에서 추측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날 당시의 경험은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전쟁이 끝난 후 현지인의 위협을 받았던 경우가 9.9%, 집단학살을 목격한 경우가 6.8%이다. 굶어서 죽을 정도의 상황을 경험했거나(16.1%), 연합군의 공습을 받았던 경험(18.8%)도 있다. 3.6%는 외국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22.4%는 전쟁이 끝난 후 수용소 생활을 했다. 수가 적기는 하지만 중전 후 윤락 생활을 한 것도 경험 내용 중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 두 명중에서 한 명은 배로 귀국을 하였고, 다음으로 기차를 주로 이용 (17.2% 33명)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4.7%(9명)는 귀국할 때까지 어떤 교통수단도 없이 걸어서 이동했다. 귀국한 장소와 출생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절반이상이 경상도 출신인 현재 국내거주 군 '위안부' 피해자의 많은 수가 중전 후 경상남도를 통해 귀국하였다.

## 6장. 귀국 후 현재 상황

## 6. 귀국 후 현재 상황

### 6-1. 귀국 후 초기 상황

#### <6-1> 귀국 후 처음거주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가 족	96	50.0	50.0	50.0
친척, 친지	11	5.7	5.7	55.7
직장(술집, 작부)	11	5.7	5.7	61.5
친구집	4	2.1	2.1	63.5
수용소	9	4.7	4.7	68.2
서울역 하숙집	1	.5	.5	68.7
위안소 동료의 집	1	.5	.5	69.3
고 향	2	1.0	1.0	70.4
종교 시설	2	1.0	1.0	71.4
공동체 (나눔의집, 양로원)	2	1.0	1.0	72.4
같이 귀국한 남자 집	3	1.6	1.6	74.0
해당 없음	25	13.0	13.0	87.0
기 타	24	12.5	12.5	99.5
수양딸로 있던 집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귀국 후 처음 거주한 곳은 가족이나 친척의 집인 경우가 55.7%(107명)로 가장 많았다. 가족에게 처음 가지 않고 일자리를 먼저 잡고 그 곳에서 거주했던 경우도 5.7%(11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수용소에 머물렀다는 경우는 4.7%(9명)

이고, 종교시설이나 하숙집, 같이 귀국한 남자의 집 등에 머물렀다는 사람이 1-2명 선으로 나타난다.

군 ‘위안부’로 가기 전에 부모 모두가 생존한 경우나 어머니만 계셨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의 집으로 갔던 경우가 높는데, 아버지만 계셨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집에서 거주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이후에 귀국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집에 거주한 경우는 없고, 나눔의 집이나 양로원 등에서 거주하였다.

#### <6-2> 귀국 후 가족만남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만났다	137	71.4	71.4	71.4
못 만났다	28	14.6	14.6	85.9
파악불가	27	14.1	14.1	100
Total	192	100.0	100.0	

#### <6-3> 만남 경우 언제 만났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바로	90	46.9	46.9	46.9
1년 미만	18	9.4	9.4	56.3
1-3년 미만	6	3.1	3.1	59.4
3-5년 미만	6	3.1	3.1	62.5

표<6-3> 다음장으로 이어짐

6-10년 미만	2	1.0	1.0	63.5
10년 이상	9	4.7	4.7	68.2
기억나지않는다	3	1.6	1.6	69.8
해당없음	28	14.6	14.6	84.4
파악불가	29	15.1	15.1	99.5
기 타	1	.5	.5	100.0
Total	192	100.0	100.0	

71.4%(137명)는 귀국 후에 가족을 만났던 것으로 나타난다. 본 조사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 약 30%(57명)을 제외하고 귀국하여 바로 가족을 만났던 경우가 46.9%(90명)으로 가장 많다. 10년이 넘어서야 가족을 만났던 경우도 4.7%(9명)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6-2. 생계수단

### <6-4> 생계수단 (중복응답, 파악불가 제외)

	장사	노점 행상	식당 술집	파출 부	공장	사채	매매 춘	농어 업	종교 인	종교 시설	결혼	가족 의존
Frequency	44	47	43	59	15	1	7	27	3	6	4	30
Percent	22.9	24.5	22.4	30.7	7.8	0.5	3.6	14.1	1.6	3.1	2.1	15.6

귀국 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은 복수로 응답을 받았다. 파출부 30.7%(59명), 장사 22.9%(44명)나 노점행상 24.5%(47명),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했던 경우 22.4%(43명)가 가장 많았고, 농업이나 어업을 하며 살았던 경우도 14.1%(27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특별히 생계활동을 하는 것 없이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았다는 경우도 15.6%(30명)이고, 먹고살기 위해 결혼을 하거나 종교시설에 간 경우도 각각 2.1%(4명), 3.1%(6명)로 나타났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후 생계수단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개인적 자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이 육체적 노동이었음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이들의 주변적인 노동의 특성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귀국한 시기의 이들 나이가 혼인 연령 전후였던 점을 주목할 때 생계수단을 자신의 힘으로 찾아야했던 결과는,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 생존의 주요수단이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이들이 얼마만큼 결혼 관계 망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6-3. 결혼과 출산

#### <6-5> 법적 혼인 여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했다	99	51.6	51.6	51.6
안했다	66	34.4	34.4	85.9
파악불가	27	14.1	14.1	100.0
Total	192	100.0	100.0	

독신으로 살았거나, 법적 혼인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는 14.1%(27명)를 빼고, 법적으로 혼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 '위안부' 피해자는 51.6%(99명)로 법적 혼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절반정도만 법적으로 혼인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70-80대 연령의 여성들과 비교해볼 때 낮은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군 '위안부'로 가기 전에 결혼경험을 가지고 있는 20명을 제외하면 군 '위안부' 경험 이후 법적 혼인의 경험을 가진 수는 더 감소하게 된다.

이 결과는 군 '위안부' 경험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귀국 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결혼이었음을 드러낸다. 군 '위안부' 경험과 결혼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섹슈얼리티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구성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주요내용은 육체적인 순결과 정조가 핵심 개념이고 이를 중심으로 여타의 경험과 인식이 구성된다. 순결과 정조의 핵심개념이 자리하면 보편적인 섹슈얼리티 경험으로 연결되지만, 만약 핵심개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탈적 섹슈얼리티 경험이 사회구조적으로 유도되는 것이다.<sup>7)</sup>

7) 여성에게 지배적이고 정상적인 성은 결혼제도 안에서의 성이다. 결혼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아직까지 주변적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가 공식 체계에서의 성이고, 후자는 비공식 체계에서의 성이다. 두 체계를 넘나드는데 있어서 남성의 경우 중첩되고 상

법적 혼인을 했다는 응답자 중에서 38.5%(74명)이 한번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2번했다는 경우가 9.9%(19명)로 나타났다. 3번 이상 법적 혼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4명)이다.

현재 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같은 연령대의 결혼경험과 특성에 대해 비교, 심화된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10명에 한 명 여성이 재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 연령 대 여성들과는 또 다른 법적 혼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법적 혼인 관계에서도 많은 수가 불안정한 결혼경험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 <6-6> 법적 혼인은 몇 번 했는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해당없음	66	34.4	34.4	34.4
1번	74	38.5	38.5	72.9
2번	19	9.9	9.9	82.8
3번 이상	4	2.0	2.0	84.8
모르겠다	2	1.0	1.0	85.8
파악불가	27	14.1	14.1	100.0
Total	192	100.0	100.0	

호 침투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단절된 의미로 읽혀진다. 즉, 여성의 성문화에 있어서 공식체계와 비공식 체계는 상호 배타적인 특성을 갖는데, 도덕적으로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나 이미 결혼 외 영역에서 성적 경험을 가졌던 경우에는 공식적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6-7>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 (과악불가 제외)

	성병 불임	남자 기피증	위안부 경험의 죄책감	주위의 시선	성관계에 대한 공포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특별한 이유없다	결혼 생각이 없었다
Frequency	8	10	19	2	33	1	2	4
Percent	4.2	5.2	9.9	1.0	17.2	0.5	1.0	2.1

독신으로 살았던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나를 묻은 질문에 결혼생각이 없어서 독신으로 살았다는 경우는 2.1%(4명) 이고, 나머지는 군 ‘위안부’ 경험이 결혼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성 관계 공포가 이유가 되었던 경우는 17.2%(33명)이고, 위안부로 갔다온 것이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9.9%(19명)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위안부’ 경험이 피해자들에게 주로 성적인 인식과 관련되어 이해되어 피해가 남아있음을 드러내는 한 자료이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정신적 외상 중의 하나가 성적기능상의 문제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성행위에 대한 혐오, 증오감, 남편/남성과의 성 관계 어려움, 성적 불안감, 성적 관심 감소, 남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증가, 성적 자아 존중감의 저하 등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경우는 당시 피해 상황에 분노하는 경향보다는 죄의식이나 수치감, 자기 비난 등의 감정이 훨씬 강하게 드러난다.

또 하나 대표적인 외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회 적응력의 손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회피적 성향을 갖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집단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특히 남성에 대한 혐오, 무관심, 친구/친척관계 소원해져 고립되거나 결혼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상화;1998)<sup>8)</sup>

8) 이상화 (1998년), 대구시민모임 주최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해」 강의자료집.

<6-8> 함께 산 남자와의 관계 (과악불가 제외)

	분처	후처	애인이나 첩
Frequency	72	50	42
Percent	37.5	26	21.9

분처 관계로 살았던 경우가 37.5%(72명)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후처나 애인 또는 첩으로 살았던 경우도 26%(50명), 21.9%(42명)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약 5명에 한 명 가량은 애인이나 첩으로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난다. 군 '위안부' 경험자들이 동일 연령 대 여성들 보다 불안정한 결혼구조 속에 놓여져 있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된다.

<6-9> 출산 자녀 유무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65	33.9	33.9	33.9
없다	113	58.9	58.9	92.7
과악불가	14	7.3	7.3	100.0
Total	192	100.0	100.0	

<6-10> 출산 자녀가 여아인 경우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43	22.4	22.4	22.4
없다	107	55.7	55.7	78.1
파악불가	21	10.9	10.9	100.0
Total	192	100.0	100.0	

<6-11> 출산자녀가 남아인 경우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51	26.6	26.6	26.6
없다	119	62.0	62.0	88.5
파악불가	22	11.4	11.4	100.0
Total	192	100.0	100.0	

혼인(법적 혼인과 사실혼 관계 모두 포함)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출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3.9%(65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들을 출산한 경우가 51명이고 딸을 출산했던 경우는 43명이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29명은 아들과 딸을 함께 출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이들이 갖는 결혼경험과 마찬가지로 동일 연령 대 여성들의 삶에 비해 출산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지고 있는 ‘한’이 많은 경우에 자식을 갖지 못하고 정상적인 여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내용을 갖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있겠다.

현재 친자녀이든 양 자녀이든 ‘자녀’가 있는 경우는 96%(50명)이다. 이 중에서 친자녀가 있는 경우가 32.3%(62명)로 나타났다.

<6-12> 현재 자녀가 있는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96	50.0	50.0	50.0
아니다	2	1.0	1.0	51.0
파악불가	94	49.0	49.0	100.0
Total	192	100.0	100.0	

<6-13> 친자녀가 있는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62	32.3	32.3	32.3
없다	34	17.7	17.7	50.0
파악불가	96	50.0	50.0	100.0
Total	192	100.0	100.0	

#### 6-4. 건강 상태

##### <6-14> 건강상태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양 호	25	13.0	13.0	13.0
만성질환	115	59.9	59.9	72.9
거동불가	23	12.0	12.0	84.9
파악불가	29	15.1	15.1	100.0
Total	192	100.0	100.0	

사망 등으로 현재의 거동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15.1%(25명)을 제외했다. 또한 사망했다 하더라도 생존 당시 건강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건강상태로 기록하였다.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답한 사람은 13.0%(25명)이고, 71.9%(138명)는 만성질환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15>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파악불가제외)

	관절염 (디스크 포함)	심 장 병	호흡기 질환 (천식, 기관지)	신 부 전 증	위장, 소화 기장 애	두 통	치매 (기억 상실)	중 풍	성 병	자궁 질환	노환
Frequency	85	31	25	8	38	19	8	10	15	24	23
Percent	44.3	16.1	13.0	4.2	19.8	9.9	4.2	5.2	7.8	12.5	12.0

표<6-15> 다음장으로이어짐

	정신 질환 (환병, 강박)	정신 착란 (환각, 환청, 히스 테리)	당 뇨 병	빈 혈	시각 장애 (백내 장 포함)	상처 후유 증	암	고 혈 압	대장 방광 이상	타 박 상	신경 마비 (전신 혈액 순환 장애)	청각 장애
Frequency	48	8	11	4	9	5	4	11	4	3	3	6
Percent	25.0	4.2	5.7	2.1	4.7	2.6	2.1	5.7	2.1	1.6	1.6	3.1

약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관절염을 앓고, 4명의 한 명 꼴인 25%(48명)이 환병이나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장 등의 소화기 장애가 19.8%(38명), 심장병이 16.1%(31명), 자궁질환이 12.5%(24명)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정신질환을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3%(14명)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에 비해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군 ‘위안부’ 피해자의 많은 수가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을 지니고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군 ‘위안부’ 경험이 귀국 후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생을 그 후유증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음을 보인다.

앞에서 피해자들이 위안소에서 앓던 대표적인 질병으로 성기, 자궁이상과 성병 비율을 합하여 약 60%, 구타.고문.외상이 24%(46명)로 나타났고 소수로 정

9) 지난 9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위안부 피해자 중 71.8%는 건강상태가 무척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28% 중 17%는 지낼만하고 10% 정도 만이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성병을 아직 치유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병의 치료가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병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병 자체를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진과 본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난다. 95년 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처리된 자료를 보면 (당시 신고된 176명중 105명이 응답) 성병이 7.6%, 방광염·밀이 붓는 병 23.8%, 정신병 14.3%, 위장염·장염 7.6%, 외상 12.4%, 기타 (당뇨, 신경통, 약물중독 등) 31.3%로 나타난다.

신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이 나타났다. 귀국 후 이러한 신체적 질병은 다분히 정신적 심리적인 외상과 연결된 신체적 증세로 드러난다.

슬픔, 감정의 억제, 위축 등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우울증을 은폐하다 보면 피로나 여러 가지 질병등 심인성 증상을 나타내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신체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sup>10)</sup>

<6-16>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경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14	7.3	7.3	7.3
없다	86	44.8	44.8	52.1
파악불가	92	47.9	47.9	100.0
Total	192	100.0	100.0	

10) 정신/심리적 갈등과 문제가 신체로 직접 드러나는 증상은

.스트레스, 좌절 ; 소화기 장애, 두통 및 어지럼증

.증오, 공격 ; 신체통증, 심계항진

.성적갈등 ; 성기능장애, 이상감각 및 심계항진 등이다.

.만성적 긴장에 의한 정신신체 증상 ; 두통, 메스꺼움, 쉽게 피로해지는 것,

만성적 짜증스러움

.외상성 신경증 ; 불면, 반복적 악몽, 자살에 대한 반추, 당시 경험에 대한 반복적 생각이 있다.

(이상화,1998년,대구 시민모임 강의자료집)

<6-17> 성병 후유증이 자녀에게 나타난 경우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4	2.1	2.1	2.1
없다	42	21.9	21.9	24.0
파악불가	146	76.0	76.0	100.0
Total	192	100.0	100.0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76%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는 결과이지만, 본 조사에서 군 ‘위안부’ 피해로 인해 자녀가 후유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2.1%(4명)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개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sup>11)</sup> 매독 등에 감염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에 사산되기도 하지만 자녀의 후유증이 몇 십년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한다.

---

11) 정신대연구소, 증언1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김명순의 증언), 한울.

6-5. 현재 주거 및 생활비

<6-18>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혼 자	85	44.3	44.3	44.3
배우자(법적혼인관계)	11	5.7	5.7	50.0
배우자(사실혼인관계)	10	5.2	5.2	55.2
형제, 자매와 동거	7	3.6	3.6	58.9
직계비속가족	53	27.6	27.6	86.5
공동체(나눔의집, 양로원)	14	7.3	7.3	93.8
종교 시설	1	.5	.5	94.3
기 타	2	1.0	1.0	95.3
파악불가	9	4.7	4.7	100.0
Total	192	100.0	100.0	

<6-19> 현재 동거인과 산 지 얼마나 되었는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1년미만	5	2.6	2.6	2.6
1-3년	6	3.1	3.1	5.7
4-5년	12	6.3	6.3	12.0
6-10년	4	2.1	2.1	14.1
11년이상	56	29.2	29.2	43.2
파악불가	109	56.8	56.8	100.0
Total	192	100.0	100.0	

사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존당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혼자 산다는 사람이 약 절반이 되었고 (44.3% 85명), 법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가 10.9%(21명)이고, 자녀와 사는 경우가 27.6%(53명)으로 나타났다. 나눔의 집이나 양로원 등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7.3%(14명)이다. 약 30%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11년 이상을 함께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20.8%(40명)이고,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전세가 32.6%(53명), 월세 12.5%(24명)으로 나타났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경우도 7.8%(15명)이 되었다.

<6-20> 주택소유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자 가	40	20.8	20.8	20.8
월 세	24	12.5	12.5	33.3
전세(임대주택)	53	27.6	27.6	60.9
공동거주(나눔의집, 양로원)	11	5.7	5.7	66.7
더부살이	8	4.2	4.2	70.8
영구임대아파트	10	5.2	5.2	76.0
더부살이	15	7.8	7.8	83.9
직계비속가족	5	2.6	2.6	86.5
과약불가	26	13.5	13.5	100.0
Total	192	100.0	100.0	

<6-21> 생활비 정부지원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그렇다	163	84.9	84.9	84.9
아니다	16	8.3	8.3	93.2
파악불가	13	6.8	6.8	100.0
Total	192	100.0	100.0	

<6-22> 생활비: 본인 수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그렇다	24	12.5	12.5	12.5
아니다	155	80.7	80.7	93.2
파악불가	13	6.8	6.8	100.0
Total	192	100.0	100.0	

<6-23> 생활비: 가족지원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그렇다	36	18.8	18.8	18.8
아니다	143	74.5	74.5	93.2
파악불가	13	6.8	6.8	100.0
Total	192	100.0	100.0	

<6-24> 생활비: 개인, 단체후원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그렇다	7	3.6	3.6	3.6
아니다	172	89.6	89.6	93.2
파악불가	13	6.8	6.8	100.0
Total	192	100.0	100.0	

생활비를 정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85%(163명)로 나타났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에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생존의 기본수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취로 사업이나 연금, 예금이자 등 생활비의 일부를 본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는 12.5%(24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활동으로 생활비를 번다는 응답은 증언집 등에 수록된 내용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할 때, 지금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는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8.8%(36명)는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일부를 지원 받는다고 답했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는 3.6%(7명)이다.

## 6-6. 군 '위안부' 신고

### <6-25> 군 '위안부' 신고는 어떻게 알았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매체 (신문,TV,뉴스)	51	26.6	26.6	26.6
가 족	17	8.9	8.9	35.4
이웃친지	31	16.1	16.1	51.6
귀국하려는중알게됨	1	.5	.5	52.1
병원 의사	1	.5	.5	52.6
공무원	3	1.6	1.6	54.2
파악불가	70	36.5	36.5	90.6
기 타	13	6.8	6.8	97.4
태평양 유족회	1	.5	.5	97.9
위안부 동료	2	1.0	1.0	99.0
정 부	2	1.0	1.0	100.0
Total	192	100.0	100.0	

군 '위안부'로 왔다는 사람의 신고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된 방법은 매체를 통한 경우가 26.6%(51명)이고, 이웃이나 친지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16.1%(31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고가 199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미 사회적으로 군 위안부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언론매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피해자 신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수의 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때, 이들의 신고를 유도하는데 언론, 매체 특히 방송과 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6-26> 신고 전에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말했나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했다	62	32.3	32.3	32.3
안했다	63	32.8	32.8	65.1
파악불가	67	34.9	34.9	100.0
Total	192	100.0	100.0	

<6-27> 신고 전 피해 사실을 말한 대상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남 편	7	3.6	3.6	3.6
이웃주민	10	5.2	5.2	8.9
자 녀	4	2.1	2.1	10.9
형제, 자매	4	2.1	2.1	13.0
위안부 동료	4	2.1	2.1	15.1
기 자	1	.5	.5	15.6
공무원	2	1.0	1.0	16.7
종교인	2	1.0	1.0	17.7
직계비속가족	9	4.7	4.7	22.4
부모님	8	4.2	4.2	26.6
파악불가	133	69.3	69.3	95.8
가 족	8	4.2	4.2	100.0
Total	192	100.0	100.0	

신고 전에 자신이 군 '위안부'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32.3%(62명)은 누군가에

게 말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한 대상은 이웃주민이 5.2%(10명), 자녀가 4.7%(9명), 부모님이 4.2%(8명)이고 남편에게 말한 경우는 3.6%(7명)였다.

32.8%(63명)은 귀국 후 신고를 하기까지의 몇 십 년의 세월 동안 은폐와 침묵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난다. 파악이 되지 않는 수를 고려할 때 전체 군 '위안부' 피해자의 절반이 이에 해당한다고 봐야겠다.

체화 되지 않은 경험에 대한 은폐와 침묵은 억압적인 삶의 경험으로 연결된다. 이들의 은폐와 침묵의 세월이 거의 50여 년이 된다는 것은 군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본인의 인식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식민지 치하에서 경험한 민족의 상처라는 선을 넘어서서 여성의 개별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해석방식이 숨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위안부 생활을 했었다는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었고, 경제적 어려움 과 결혼의 한, 몸의 고통 등이 힘들었던 요소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남아있는 한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고 친자녀를 갖지 못한 것,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해보지 못한 것, 제대로 된 가족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 6-7. 소결

해방 이전 해인 1944년까지 귀국한 사람은 9.4%(18명)이고, 1945년 해방되던 해에 귀국한 사람이 43.3%(83명)이다. 그 다음 해인 1946년 귀국자는 25.5%(49)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종전 직후에 귀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귀국한 장소는 경상남도가 48.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8.9%(17명)는 귀국한 장소가 서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 장소가 기억나지 않거나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20.8%(40명)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상남도가 귀국장소로 가장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경상남도로 귀국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43.8% 84명) 부산을 통해 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에도 서울은 8.9% (17명), 인천이 4.7%(9명)이고 다양한 지역이 1-2명 선으로 분포되어 있다.

두 명 중 한 명 (55.7% 107명)의 군 '위안부' 피해자는 귀국 후 가족이나 친척을 찾아가 그 곳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먼저 잡고 그 곳에서 거주했던 경우는 5.7%(11명), 수용소에 머물렀다는 경우는 4.7%(9명), 종교시설이나 하숙집, 같이 귀국한 남자의 집 등에 머물렀다는 사람이 1-2명 선으로 나타났다.

귀국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가족이나 친척집에 거주하였는데, 특히 가족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어머니의 생존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71.4%(137명)는 귀국 후에 가족을 만났지만, 약 15%의 피해자들은 지금껏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귀국한 지 1년 이내에 가족을 만난 경우가 56.3%(108명)로 가장 많다. 10년이 넘어서야 가족을 만났던 경우도 4.7%(9명)가 된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귀국 후에 주 생계수단으로 삼은 것은 파출부 (30.7% 59명), 장사 (22.9% 44명), 노점행상 (24.5% 47명), 식당이나 술집 (22.4% 43명), 농어업 14.1%(27명)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생계활동 없이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았다는 경우도 15.6%(30명)이고, 먹고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거나 종교시

설에 간 경우는 각각 2.1%(4명), 3.1%(6명)로 나타났다.

독신으로 살았거나, 법적 혼인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는 14.1%(27명)를 빼고, 법적으로 혼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 '위안부' 피해자는 51.6%(99명)로 법적 혼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절반정도만 법적으로 혼인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70-80대 연령의 여성들과 비교해볼 때 낮은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법적 혼인을 했다는 응답자 중에서 38.5%(74명)이 한 번 혼인하였고, 2번했다는 경우가 9.9%(19명)로 나타났다. 3번 이상 법적 혼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4명)이다. 법적 혼인을 했더라도 적지 않은 수가 불안정한 결혼경험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결혼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경우는 2.1%(4명)에 불과했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 온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군 '위안부' 경험이 남긴 피해의 강제적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자와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약 5명에 한 명 가량은 애인이나 첩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본처 관계로 살았던 경우가 37.5%(72명)로 가장 많았으나 후처나 애인 또는 첩으로 살았던 경우도 26%(50명), 21.9%(4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 '위안부' 경험자들이 동일 연령 대 여성들 보다 불안정한 결혼구조 속에 놓여져 있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된다.

혼인(법적 혼인과 사실혼 관계 모두 포함)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출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3.9%(65명)이다. 결혼경험과 마찬가지로 동일 연령 대 여성들의 삶에 비해서 출산의 경험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본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71.9%(138명)는 만성질환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절반의 피해자들이 관절염을 호소하였고, 4명의 한 명이 햇병이나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위장 등의 소화기 장애가 19.8%(38명), 심장병이 16.1%(31명), 자궁질환이 12.5%(24명)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3%(14

명)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에 비해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많은 수가 군 '위안부' 경험으로 갖게 된 '기억'들이 귀국 후 생활에 장애가 되고, 이로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질환이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피해자의 귀국 후 삶이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야 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제대로 질병을 치료받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인 경우 치료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생활비 지원 외에 의료지원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심리치료를 위한 별도의 내용 구성도 요구된다.

국내에 살고 있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반은 혼자 사는 것 44.3%(85명)으로 파악되었다. 법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가 10.9%(21명)이고, 자녀와 사는 경우가 27.6%(53명)으로 나타났다. 나눔의 집이나 양로원 등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7.3%(14명)이다. 약 30%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11년 이상을 함께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누구와 살고 있던지 간에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20.8%(40명)에 불과했고,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전세가 32.6%(53명), 월세 12.5%(24명)로 나타났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경우도 7.8%(15명)가 되었다. 혼자 살고 있다는 피해자 수에 준해서 생각해 볼 때 주거 또한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중요한 복지혜택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5%:163명)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에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생존의 기본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물가 인상률을 고려한 생활비 지원 인상도 항상 고려되어야 정부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피해자들이 생활의 기본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위안부’로 갔다온 사람의 신고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된 방법은 매체를 통한 경우가 26.6%(51명)이고, 이웃이나 친지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16.1%(31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전에 자신이 군 ‘위안부’로 갔다온 것에 대해서 32.3%(62명)은 누군가에게 말을 했지만, 32.8%(63명)은 귀국 후 신고를 하기까지의 몇 십년의 세월 동안 은폐와 침묵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난다. 은폐와 침묵의 세월은 군 ‘위안부’ 생활의 피해가 귀국 후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한 대목이다.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위안부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고통이었고, 경제적 어려움과 결혼의 한, 몸의 고통 등이 힘들었던 요소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남아있는 한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고 친자녀를 갖지 못한 것,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해보지 못한 것, 제대로 된 가족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장 큰 한이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일반적인 여자 일생이 결혼하여 아이 낳고 가족 뒷바라지하면서 사는 내용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후 삶은 일반의 범주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일탈적인 삶으로 스스로에게 각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 ‘위안부’ 경험이 개인에게 남긴 가장 큰 피해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파괴한 것으로 모아지게 된다.

참 고 문 헌

강만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일본군 ‘위안부’ 정책 형성의 조선측 역사적 배경」, 『일본군 ‘위안  
부’ 문제의 진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역사비평사,  
1997.

강정숙, 「일본군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회,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吉見義明, 「從軍慰安婦」政策と日本國家の指揮命令系統」, VAWW-NET Japan,

-----, □「慰安婦」戰時性暴力の實態 I - 日本,臺灣,朝鮮編□, 2000

-----, 第5會 全國女性史研究交流のつどい, 「戦争と女性-“軍慰安所マップ”が語  
るも の」, 1992

정진성, 「군 ‘위안부’/정신대의 개념에 관한 고찰」, 『사회와 역사』, 60집,  
2001.

-----, 「군 ‘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 21권 47호.

이만열, 「조선의 입장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제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이상화 (1998년), 대구시민모임 주최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해」 강  
의자료집

이정옥, 「일제시기 여성 노동에 있어서의 민족과 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0.

한국정신대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  
안부’들1□ 한울, 1993

한국정신대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  
안부’들2□ 한울, 1997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

안부'들3 □ 한울, 199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성노예전범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0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성 노예 전범 국제법정  
한국위원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5□, 풀빛, 2001

한국정신대연구소, □할머니 군 '위안부'가 뭐예요□, 한겨레신문사, 2000

2000년 일본군 성 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 남북한 공동기소장 (기소장),

<http://www.k-comportwomen.com>

婦女救援基金會, □臺灣慰安婦報告□, 臺灣商務印書館, 1999

長澤建一, □漢口慰安所□, 圖書出版社, 1992

VAWW-NET Japan, □『慰安婦』戰時性暴力の實態 I - 日本.臺灣.朝鮮編□,  
2000

Yoshimi, Yoshiaki, Comfort Women -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연구 요약 및 제언

## (1) 개인 인적 상황

지난 10여 년 간 생존자의 30%(60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조사 가능한 생존자도 전체의 64%(123명)에 그치고 있어 현재에도 조사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생존자들의 출생연도는 1910년부터 1934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 1921-1930년 출생자가 77.1%(148명)를 점할 정도로 절대다수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졌다는 점과 동시에 1920년대 생들이 10대, 20대의 여성이었던 1930-40년대에 위안부 동원이 가세되었다는 경향을 말해준다.

생존자들의 출생지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경상도 지역 출신의 생존자가 전체의 55.7%(106명)로 이 지역의 위안부 동원이 극심하였다. 전라도 지역 출신 생존자가 그 다음 순(36명)이다. 생존자들의 학력은 무학(41.1%; 79명), 야학(4.2%; 8명) 및 소학교 중퇴(19.3%; 37명)가 대다수를 점할 정도로 매우 낮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을 감안한다면, 생존자 여성들의 교육이 특별히 더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안부 신고의 시기는 1992년과 1993년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루어진다. 정부에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고(152경우), 정대협과 유족회에 한 경우가 동수(39경우)로 나타나며, 대구시민모임에 신고한 생존자도 있었다(7경우).

## (2) 동원 전 상황

군 ‘위안부’ 동원 당시 60.9%(117명)가 부모가 생존해 있던 상태였고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13.5%(26명),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8.3%(16명)를 차지한다. 당시의 아버지의 생업을 조사한 결과, 농업에 종사한 경우가 46.2%(49명)로 나타나고 남의집살이가 9.4%(10명), 장사가 8.5%(9명), 수공업적 생산이

7.5%(8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생업 역시 농사를 주종(30명)으로 하고 있었다.

위안부 동원 당시의 87.0%(167명)가 미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결혼이 5.7%(11명), 이혼이 3.6%(7명), 과부가 0.5%(1명), 사실혼이 0.5%(1명)의 사례를 합하면 전체의 10.3%(20명)를 차지한다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안부 동원 당시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던 여성은 전체의 69.3%(133명)이며 가족과 떨어져 산 경우는 25.0%(48명)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당시 하던 일은 가사로 보고된 경우가 50%이며(96명), 이외에 식모가 13.5%(26명), 공장 일이 10.4%(20명)로 나타난다.

이것은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여성들의 대다수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고 있거나 식모나 보모로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노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모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군 ‘위안부’ 동원은 평범한 젊은 조선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3) 강제동원 상황

군 ‘위안부’ 동원 시기는 1930년부터 1945년이라는 기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생존자의 출생시기 분포와 연결시키면 미성년자인 10대에 주로 동원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1937년을 시점으로 하여 위안부 동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서, 1937년-1944년간의 동원이 전체 생존자의 85.4%(168명)를 차지할 만큼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에서 군 ‘위안부’ 동원은 1937년에 중국전면전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37년을 계기로 하여 가속화되었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위안부로 동원한 사람들은 군인/군속이 20.6%(45명), 순사가 20.6%(45명), 이장/구장이 7.8%(17명)로 나타나는 등 국가의 공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수였다. 한편, 한국인 모집업자에게 동원된 여성이 29.4%(64명)이고 일본인 모집업

자에게 동원된 여성은 16.0%(35명)로 상당수 있었다. 이것은 위안부 연행이 국가와 사적 조직을 통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나타낸다.

위안부 동원방식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취업사기의 경우가 전체 생존자의 절반 가량인 44.2%(98명)임을 알 수 있다. 취업사기 이외에도 유괴 및 납치가 29.4%(65명), 군관의 압력이 21.7%(48명)로 보고된다. 취업사기의 경우에도 군관 및 이장 등의 압력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취업을 빙자한 강제연행'의 성격이 짙다. 또한 군관의 압력에 있어서도 취업을 미끼로 내세운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식민지하의 한국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군관 및 관련업자들의 활동이 서로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위안부 모집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4) 군 '위안부' 상황

군 '위안부'로 처음 동원된 지역은 중국(당시 만주 포함)이 49.5%(95명)로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이 20.7%(40명), 일본 12.5%(24명), 대만 8.9%(17명), 캐롤라인 제도 등 태평양지역 6.8%(13명), 한국 1.6%(3명)로 전체적으로 광범하게 나타났다. 처음 동원된 지역에서 62%(119명)는 이동하지 않았고 나머지 38%(73명)는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국경을 넘어 이동하였다. 두 번째까지 이동한 경우는 13%(25명)에 불과하였다.

다른 동남아시아의 경우 강간피해자도 상당수 있는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성 노예 피해가 주종을 이룬다. 또한 이들은 일본군이 자기 나라를 침략한 후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조선인 피해자들은 일본군의 전쟁 시작과 확대에 따라 국외로 동원된 것이다. 일본군은 각지의 사정과 일본군 부대규모를 감안하여 위안소 설립계획을 세웠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으로 도향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총 체류기간은 3년 미만 30.3%(58명), 3~7년 미만 42.2%(81명), 7년이상(최고

는 14년)이 17.1%(33명)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동남아시아 피해자와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장기간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위안소 시설은 군에서 새로 지은 건물(천막, 막사 등)에 32.4%(94 경우), 민가 29.9%(86 경우)로 나타났고 이것은 군이 제공했다. 민간인이 위안소 주인인 경우가 45.5%(132 경우), 부대(군인, 군속)가 주인인 경우는 15.9%(46 경우)로 군대가 직접 운영한 군 직영 위안소보다 업자를 이용한 군 전용 위안소가 3배정도 많았다.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은 육군이 40%(116 경우)로 가장 높았고 장교와 사병이 함께 이용한 경우가 46.9%(90명), 사병이 18.2%(35명), 장교가 8.9%(17명)로 드러났다. 조선인 피해자들은 장교보다는 사병용 위안소에 주로 배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안소에서 도망을 시도한 경우는 22.4%(43명)이고 시도하지 못한 경우는 46.4%(89명)이었다. 도망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는 지리, 물정을 몰라서 23.8%(36명), 군인 감시 16.5%(25명), 자포자기와 체념 14.5%(22명), 위협과 협박 11.2%(17명), 두려워서 8.6%(13명), 주인감시 8.6%(13명) 등으로 드러났다. 위안소에서 감금당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도망을 시도한 43명중에서 22명은 실패했고 18명은 성공했다.

위안소에서 폭력 경험은 구타 54.7%(105명), 위협 35.4%(68명), 굶기 15.6%(30명), 감금 13.0%(25명), 고문 7.8%(15명) 순으로 조사되어 특히 구타와 위협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47.9%(92명)가 군인들이 돈 혹은 군표를 지불했다고 한 반면 자신들은 댓가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4.2%(104명)이었다. 16.1%(31명)만이 댓가를 받았다고 했다.

위안소에서 앓던 질병은 성기, 자궁이상 35.4%(68명), 성병 24%(46명), 구타, 고문, 외상이 24%(46명)로 나타났다. 성기, 자궁이상과 성병 비율을 합하면 59.4%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된다. 대부분 10대의 미성년자들이 갑작스럽게 군인들에게 지속적인 강간을 당하는 상태에서 성기가 온전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체적인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 역시 상당했을 것이다.

이들이 걸린 성병의 종류는 매독, 임질, 요코네, 서혜부임파선육아종 등으로 매독에 걸린 경우가 15.9%(18명)로 조사되었다. 성병검사는 56.3%(108명)가 받았다고 응답했고 검사의 주기는 정기적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번이 41.7%(80명)로 가장 많았다. 성병 방지 방법은 60.4%(116명)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본군의 위안소에 대한 관리에서 위생 부분은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병 방지 방법으로는 샷쿠(콘돔) 사용, 약(주사포함), 뒷물이 있었다. 샷쿠 이용이 51%(98명)로 성병방지 방법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두 가지 이상 중복해서 쓴 비율이 42.2%(81명)로 조사되었다. 성병방지를 위한 약(주사포함)의 종류는 606호가 24.4%(47명)로 제일 많았고 이외 소독약이 이용되었다. 실제로 606호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38%(73명), 없다는 사람이 20.8%(40명)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피해자들이 위안소 내에서 경험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성 노예로 동원되어 폭력과 강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위안소 기간을 간신히 견디고 전쟁이 끝난 뒤 무사히 귀국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신고하기까지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정말 운이 좋은 생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 (5) 종전.귀환 상황

종전 당시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약 60%가 되기는 하였지만, 12%는 종전이 되고도 한참 후에나 전쟁이 끝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자 3-4사람 중에서 한 명(28.6%)은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 이동하였고, 위안소에 함께 있었던 위안부들끼리 알아서 이동했던 경우도 12.5%인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에 군인들의 보호와 안내로 이동을 했던 경우는 15.1%이고 위안소 주인이 인솔했던 경우는 3.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남아 귀국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두 명중에서 한 명은 배로 귀국을 하였고, 다음으로 기차를 주로 이용 (17.2% 33명)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4.7%(9명)는 귀국할 때까지 어떤 교통수단도 없이 걸어서 이동했다.

#### (6) 귀국 후 현재 상황

해방 이전 해인 1944년까지 귀국한 사람은 9.4%(18명)이고, 1945년 해방되던 해에 귀국한 사람이 43.3%(83명)이다. 그 다음 해인 1946년 귀국자는 25.5%(49)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종전 직후에 귀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귀국한 장소는 경상남도가 48.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8.9%(17명)는 귀국한 장소가 서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로 귀국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43.8% 84명) 부산을 통해 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 중 한 명 (55.7% 107명)의 군 '위안부' 피해자는 귀국 후 가족이나 친척을 찾아가 그 곳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일자리를 먼저 잡고 그 곳에서 거주했거나 수용소에 머무르기도 했다. 71.4%(137명)는 귀국 후에 가족을 만났지만, 약 15%의 피해자들은 지금껏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귀국한 지 1년 이내에 가족을 만난 경우가 56.3%(108명)로 가장 많다. 10년이 넘어서야 가족을 만났던 경우도 4.7%(9명)가 된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귀국 후에 주 생계수단으로 삼은 것은 파출부 (30.7% 59명), 장사 (22.9% 44명), 노점행상 (24.5% 47명), 식당이나 술집 (22.4% 43명), 농업 14.1%(27명)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생계활동 없이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았다는 경우도 15.6%(30명)이고, 먹고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거나 종교시설에 간 경우는 각각 2.1%(4명), 3.1%(6명)로 나타났다.

독신으로 살았거나, 법적 혼인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는 14.1%(27명)를 빼고, 법적으로 혼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 '위안부' 피해자는 51.6%(99명)로 법적 혼

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절반정도만 법적으로 혼인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70-80대 연령의 여성들과 비교해볼 때 낮은 수치이다. 법적 혼인을 했다는 응답자 중에서 38.5%(74명)이 한번 혼인하였고, 2번했다는 경우가 9.9%(19명)로 나타났다. 3번 이상 법적 혼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4명)이다. 법적 혼인을 했더라도 적지 않은 수가 불안정한 결혼경험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결혼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경우는 2.1%(4명)에 불과했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 온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군 '위안부' 경험이 남긴 피해의 강제적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자와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약 5명에 한 명 가량은 애인이나 첩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본처 관계로 살았던 경우가 37.5%(72명)로 가장 많았으나 후처나 애인 또는 첩으로 살았던 경우도 26%(50명), 21.9%(4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 '위안부' 경험자들이 동일 연령 대 여성들 보다 불안정한 결혼구조 속에 놓여져 있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된다.

혼인(법적 혼인과 사실혼 관계 모두 포함)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출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3.9%(65명)이다. 결혼경험과 마찬가지로 동일 연령 대 여성들의 삶에 비해서 출산의 경험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본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71.9%(138명)는 만성질환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절반의 피해자들이 관절염을 호소하였고, 4명의 한 명이 합병증이나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위장 등의 소화기 장애가 19.8%(38명), 심장병이 16.1%(31명), 자궁질환이 12.5%(24명)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3%(14명)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에 비해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많은 수가 군 '위안부' 경험으로 갖게 된 '기억'들이

귀국 후 생활에 장애가 되고, 이로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질환이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살고 있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반은 혼자 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4.3%(85명) 법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가 10.9%(21명)이고, 자녀와 사는 경우가 27.6%(53명)으로 나타났다. 나눔의 집이나 양로원 등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7.3%(14명)이다. 약 30%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11년 이상을 함께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누구와 살고 있던지 간에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20.8%(40명)에 불과했고,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전세가 32.6%(53명), 월세 12.5%(24명)로 나타났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경우도 7.8%(15명)가 되었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5%(163명)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에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생존의 기본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군 '위안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6.6%(51명)이고, 이웃이나 친지들의 말을 통해서가 16.1%(31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전에 자신이 군 '위안부'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32.3%(62명)은 누군가에게 말을 했지만, 32.8%(63명)은 귀국 후 신고를 하기까지의 몇 십 년의 세월 동안 은폐와 침묵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난다. 은폐와 침묵의 세월은 군 '위안부' 생활의 피해가 귀국 후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한 대목이다.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위안부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고통이었고, 경제적 어려움과 결혼의 한, 몸의 고통 등이 힘들었던 요소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남아있는 한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고 친자녀를 갖지 못한 것,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해보지 못한 것, 제대로 된 가족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장 큰 한이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일반적

인 여자 일생이 결혼하여 아이 낳고 가족 뒷바라지하면서 사는 내용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후 삶은 일반의 범주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일탈적인 삶으로 스스로에게 각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 ‘위안부’ 경험이 개인에게 남긴 가장 큰 피해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파괴한 것으로 모아지게 된다.

## 제언

### 【피해자 지원의 측면에서】

○ 생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연구에의 박차와 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고령여성들에 대한 배려 및 치유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이 요청되며 이를 수행할 전문 요원의 양성도 필요하다.

○ 정부에서 주는 생활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을 고려한 생활비 지원 인상도 항상 고려되어야 이들이 생활의 기본 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생활비 지원 외에 의료지원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심리치료를 위한 별도의 내용 구성도 요구된다.

### 【진상규명의 측면에서】

○ 동원자 조사에서 한국인 모집업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위안부 동원

및 이송 등에 관련된 한국인들을 발굴·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위안소에서 아편을 목격한 경험, 군표와 관련된 내용 등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한 아편을 제조한 일본기업과 군표를 바꾸어준 일본의 은행 등 일본의 기업관여와 관련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해외 발굴조사의 측면에서】

○ 피해자들이 동원된 지역과 경로 등을 통해서 해외 발굴조사 사업의 영역을 좀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피해자 발굴작업이 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피해자 동원경로 등을 참고로 인도네시아, 버마, 파푸아뉴기니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체적인 측면에서】

○ 위안소 상황에 대한 이번 통계조사는 전체적인 피해 중에서 현재 살아서 신고한 피해자들의 경험을 대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이용하기에는 위험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 앞으로 문서 증거가 거의 없고 증언에 의존해서 피해자를 등록 받는 경우에는 서면신고가 아니라 비디오로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녹음도 해서 그 자료에 의존하는 편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보다 정확하게 가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설 문 지





- 4) 아무도 몰랐다                      5) 기타
20. 무슨 명목으로 동원되었는가?
- 1) 일자리(공장, 간호사 등등) 2) 공부                      3) 먹이고 입혀준다
- 4) 정신대, 처녀공출                      5) 누군가를 대신해서 6) 아무 영문도 몰랐다
- 7) 기타
21. 어떤 방식으로 동원되었는가? (두 항목까지 가능)
- 1) 취업사기/취업빙자 연행                      2) 유괴 및 납치
- 3) 인신매매                                      4) 군관의 압력                      (정신대 등)
22. 증언자가 당시 연행과정을 묘사한 내용을 그대로 상세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연행되었는가를 3줄 정도로)

---



---



---

23. 그 때 돈을 받았습니까?
- 1) 받았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24. (받은 경우에 답해주십시오)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_\_\_\_\_
25. 얼마를 받았습니까? \_\_\_\_\_
26. 도착지로 이동하는 중에 성폭력을 당했습니까?
- 1) 당했다                                      2) 아니다
27.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 1) 있었다                                      2) 없었다

- 군위안부 상황 -

다음의 난을 채워주십시오. 한 군대의 위안소에만 있었던 경우는 첫 번째만 기입해주시고, 이동한 곳이 여러군데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 머문 장소 순서로 3

개까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28. 장소	29. 시설형태	30. 주인, 관리자	31. 동료	32. 체류기간	33. 주이용군인
첫번째	국가_____시(市)_____	1)민가 2)상가 3)호텔, 학교 등 시설 4)군에서 새로 지은 건물 (천막,막사포함) 5)기타	1)일본인 민간인 2)조선인 민간인 3)부대(군인, 군속포함) 4) 기타	일본인 여성 _____명 조선인 여성 _____명 기 타 여 성 _____명	_____년 동안	1) 육군 2) 해군 3) 육군과 해군 4) 기타
두번째	국가_____시(市)_____	1)민가 2)상가 3)호텔, 학교 등 시설 4)군에서 새로 지은 건물 (천막,막사포함) 5)기타	1)일본인 민간인 2) 조선 인 민간인 3)부대(군인, 군속포함) 4) 기타	일본인 여성 _____명 조선인 여성 _____명 기 타 여 성 _____명	_____년 동안	1) 육군 2) 해군 3) 육군과 해군 4) 기타
세번째	국가_____시(市)_____	1)민가 2)상가 3)호텔, 학교 등 시설 4)군에서 새로 지은 건물 (천막,막사포함) 5) 기타	1)일본인 민간인 2) 조선 인 민간인 3)부대(군인, 군속포함) 4)기타	일본인 여성 _____명 조선인 여성 _____명 기 타 여 성 _____명	_____년 동안	1) 육군 2) 해군 3) 육군과 해군 4) 기타

34. 도망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5. 도망을 시도하지 못했을 경우 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1) 군인의 감시

2) 주인의 감시

3) 동료의 감시

4) 지리, 물정을 몰라서

5) 두려워서

6) 도망가다 잡히면 죽인다고 위협, 협박 때문에

7) 체념, 자포자기

8) 기타(정신이상 등으로)







자세히)

- 1) 배(일본군\_/연합군\_/민간\_) 2) 자동차(일본군\_/연합군\_/민간\_)  
3) 기차(일본군\_/연합군\_/민간\_) 4) 주로 도보  
5) 기억이 나지 않는다 6) 기타

61. 귀국하셨습니다?

- 1) 귀국하지 않았다 2) 귀국했다 \_\_\_\_\_ 년 \_\_\_\_\_(계절)

62. 귀국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_\_\_\_\_(도시이름)

- 귀국 후 현재 상황 -

63. 귀국 후 처음 거주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 1) 가족 2) 친척, 친지 3) 직장  
4) 친구 집 5) 수용소 6) 기타

64. 귀국후 가족을 만나셨습니까?

- 1) 만났다 2) 못만났다.

65. (가족을 만난 경우에) 그제 언제였습니까?

- 1) 바로 2) 1년미만 3) 1~3년미만  
4) 3년~5년미만 5) 6년~10년미만 6) 10년이상  
7) 기억이 나지 않는다

66. 귀국 후 생계수단으로 삼은 것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1) 장사 2) 노점, 행상 3) 식당, 술집 등  
4) 식모, 파출부 5) 공장 6) 사채(고리대금)  
7) 매매춘 8) 농어업 9) 종교인  
10) 종교시설에서 생활 11) 가족의존 12) 기타 \_\_\_\_\_

67. 법적 혼인여부

- 1) 했다 \_\_\_\_\_ 번 2) 안했다





(아래는 답할 수 있는 것만 써주십시오)

86.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87.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88. 한국 정부에 대한 느낌

89. 일본 정부에 대한 느낌

차 트